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698-01

2018.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추진 체계 개선방안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충남연구원

연구 담당

윤정미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조영재 | 연구위원 | 제3, 5장 집필

김용현 | 책임연구원 | 제3장 집필

한승석 | 연구원 | 제2, 4장 집필

정책연구보고 P000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추진 체계 개선방안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12.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크리커뮤니케이션

ISBN | 979-11-6149-000-0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 방법 3

제2장 정책의 이해 및 고찰

1.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해 5
2. 농어촌서비스기준 추진현황 19

제3장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29
2. 국외 사례 44

제4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문제점 49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실태 55
3. 공무원 인식조사 67
4. 소결 82

제5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개선방안

1.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85
2. 지방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90

부록

1.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2011~2013) 95

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2014년, 9개 부문 32개 항목)	96
3. 국가차원의 핵심항목	97
4. 지자체 차원의 선택항목	98
5. 지역발전투자협약서(예시)	102
6.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	103

표 차례

제2장

<표 2-1> 새로운 삶의 질 정책 기초	12
<표 2-2>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13
<표 2-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이해	16
<표 2-4> 2018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17
<표 2-5> 농어촌서비스기준 연차별 공통추진업무 현황	23
<표 2-6>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평가 연구 담당기관	25
<표 2-7> 농어촌서비스기준 연차별 특별추진업무 현황	26

제3장

<표 3-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의 비교	33
---	----

제4장

<표 4-1>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56
<표 4-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58
<표 4-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58
<표 4-4> 2017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	60
<표 4-5> 광역자치단체별 선택항목	64
<표 4-6> 광역자치단체별 선택항목 부문과 항목 수	64
<표 4-8> 충청남도 2016년과 2017년 실적	66
<표 4-9> 인터뷰 조사 개요	67
<표 4-10> 설문 조사 개요	71
<표 4-11> 응답자 특성	71
<표 4-12> 제시된 선택항목으로 추가항목	80
<표 4-13>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견	81

제5장

<표 5-1> 수정형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연계 추진도	89
<표 5-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90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농어촌 삶의 질 정책 추진 경과	10
<그림 2-2> 제3차 계획 수립 경과	11

제3장

<그림 3-1> 지역발전투자협력 개요	35
<그림 3-2> 투자협약체계 절차	39
<그림 3-3>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체계	40
<그림 3-4> 운영체계	41
<그림 3-5> 지자체 합동평가 체계	41

제4장

<그림 4-1> 행정조사 일정(예. 충청남도)	61
<그림 4-2> 농어촌서비스기준 행정조사표	62
<그림 4-3>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절차	67

제5장

<그림 5-1> 삶의질향상정책의 위상정립 개념도	86
<그림 5-2> 수정형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연계 추진체계도	88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는 실질적 정책수단의 부재로 실효성이 부족했음.
 - 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제도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도 없으며 미 추진 시, 이에 대한 불이익도 없는 실정

-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 속에서 국가가 농어업인의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운영하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농촌 정책의 핵심 수단인 균특회계 재원이 지자체로 이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도의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은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 존재
 - 중앙부처가 정책 및 투자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부처가 제시한 방향에 따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계획협약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도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을 도입했지만 삶의 질 위원회와 중앙부처, 도, 시·군 간의 서비스기준 제도 이행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정책 추진이 어려움.
 - 지자체 현황을 반영한 항목 선정과 도 시책을 통한 목표치 달성을 기대하였으나 서비스기준 시책 연계 미흡으로 실효성 저하
 - 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 예산 등 지자체의 실질적 정책수단 부재
 - 제도 추진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재하고 미 추진 시 이에 대한 불이익도 없는 실정
 -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담당 공무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지자체 서비스기준(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경우 개별 연구자의 연구 활동으로 머물러 도 시책으로 연결 미흡
- 지자체의 정책 추진 및 자원 활용과 연계, 지자체의 부서 간 협력 강화 등 실질적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이행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방안 모색 필요

1.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추진체계에 대해 고찰·진단하여 추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공무원과 농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이론적 고찰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 및 추진 실태에

대해 분석함.

- 둘째,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인식도, 필요성, 문제점 및 한계, 추진을 위한 문제 개선사항 등을 도출
- 셋째, 제도 추진을 위한 관련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적용가능 방안 조사
- 마지막으로 향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함.

2. 연구의 내용 및 추진 방법

2.1. 연구의 내용

- 이론적 고찰 및 정책 추진 현황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고찰 및 정책 추진 실태 조사
 -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하고 이행실태 점검 및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고찰
 - 지자체 차원에서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추진 사례 조사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시사점
 -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인식, 필요성, 만족도, 문제점 및 한계점 그리고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도출
 -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 도출
-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
 - 제도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적용가능성 도출

- ex. 프랑스에서는 ‘농촌을 위한 부처 공동위원회(CIR)’ 주관으로 광역 지자체와 농촌계약을 맺어 공공서비스, 경제, 교육, 문화 등 104개 정책수단 중 협약이 체결된 분야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투자를 실시하는 사례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정착 및 정책 추진 제고방안 방향 및 과제 도출
 -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및 운영방안 도출

2.2. 연구 추진 방법

-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 설문조사 실시: 지역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추진 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충남 도, 시·군의 삶의 질 정책 담당자 및 기획업무 담당자를 대상
 - 핵심 항목과 선택 항목에 대한 별도의 설문 문항 구성
 - 심층 인터뷰 조사: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구체화
- 기존 연구 자료의 활용 및 공무원, 전문가 등 관련주체의 협력 연구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과 추진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 실태 분석에 참고하도록 함.
 - 사례 대상인 광역지자체 및 시·군 관련 공무원의 참여와 협조에 의해 그동안의 추진절차 및 문제점 도출
 -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에 의한 세미나, 워크숍, 자문회의 등의 개최를 통한 다양한 의견 수렴

제 2 장

정책의 이해 및 고찰

1.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¹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해

1.1. 관련 법 검토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이 명시되어 있음.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에 근거한 계획이며, 특별법에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에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어업

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으로 명시함.

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목적
 - 이 법은 농어촌과 도시지역 간에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념
 - 특별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물 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
-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소득안정화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확대에 관한 사항
- 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사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 (위원회)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운영함.
 - 위원장은 국무총리,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며,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위원회 운영
 - (실무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운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 법 시행령)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제시
 - 농어업인 삶의 질 법 제3조 제6호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정의하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이행 제고 및 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 계획 및 시·군·구 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음.
 - (실태 조사 시 농어촌서비스기준 우선적 고려)제8조 제1, 2항 농어업인등의 복지실태, 농어촌의 교육여건 및 교통·통신·환경·기초생활여건 등 지역개발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조사해야 하며,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1.2.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이해²

1.2.1. 계획 수립의 목적

- 본 계획은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와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 경제 침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주 여건 및 경제활동 여건을 종합 개선함으로써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수립

²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으로 명시함.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pp. 1~7

- 농어촌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농어촌다움과 편의성·안전성을 갖춘 정주 공간 구현
-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 주민 소득기회 다각화

1.2.2. 계획의 성격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를 둔 5년 단위 법정계획
- 보건·복지, 교육, 지역개발,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해 농어촌 공간 관점으로 통합 조정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종합계획
-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계획으로 관계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평가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지침 계획
- 민·관 합동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³⁾를 중심으로 18개 부·청이 협력하여 수립하는 범정부 협업 계획임.

1.2.3. 계획수립 과정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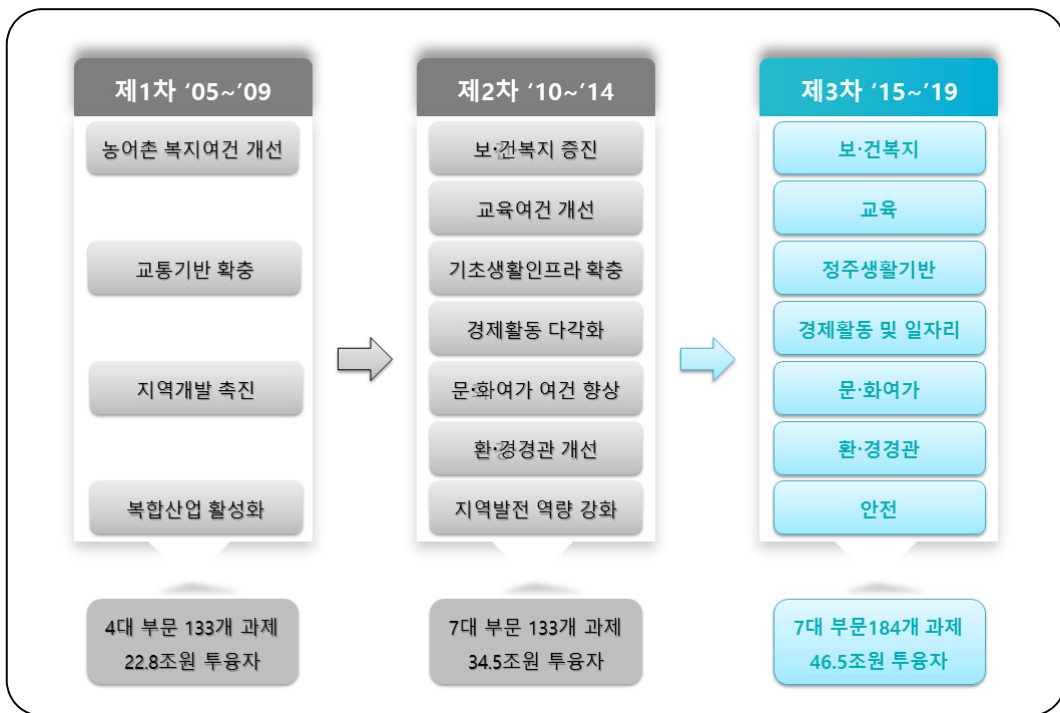
- '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정 후, 제1차('05~'09), 제2차('10~'14)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추진됨.

³⁾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18개 부처로는 기재부, 교육부, 미래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해수부, 국민안전처 (실무위: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⁴⁾ 채종현 외,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제고방안, 대구경북연구원, pp. 3

- 제1차 계획은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 정주공간으로서의 농산어촌」을 비전으로 4대 부문 133개 과제에 총 예산 22.8조 원
- 제2차 계획은 「삶터, 일터, 쉼터가 조화된 행복한 농어촌 구현」을 비전으로 7대부문 133개 과제에 총 예산 34.5조 원
- 제3차 계획은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을 비전으로 7대 부문 184개 과제에 총 예산 46.5조 원

〈그림 2-1〉 농어촌 삶의 질 정책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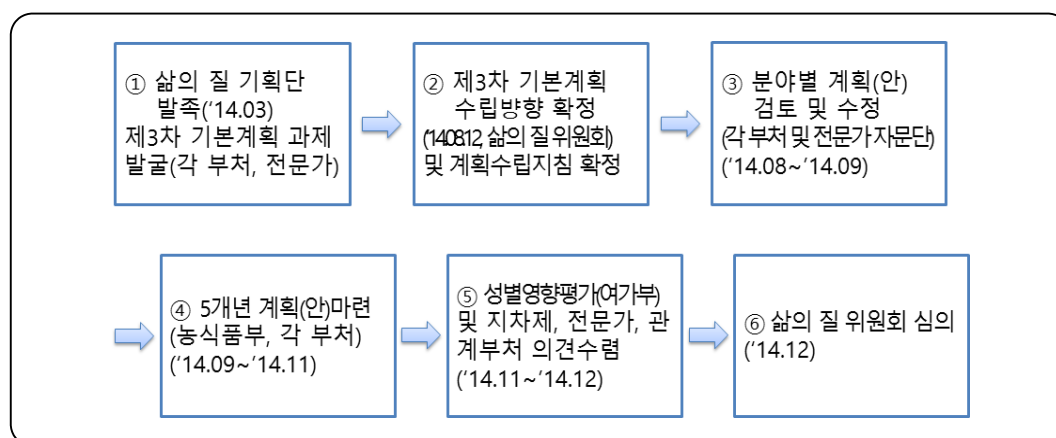


자료: 채중현 외,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제고방안, 대구경북연구원, p. 3 재작성

1.2.4. 제3차 계획 수립 절차⁵

- 범부처 협업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계획안을 마련하고 일반국민·지자체 의견을 수렴·보완
- 범부처 참여 농어촌 삶의 질 향상 기획단,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자문을 거쳐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 확정('14.08.12 삶의 질 위원회 심의)
- 각 분야별 세부과제 발굴 및 기본계획(안) 마련
- 농어촌 복지실태조사('13.9~10), 현장 모니터링단 의견조사(9.3~9.23) 등을 실시하여 농어촌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 발굴에 주력
- 온라인 정책포럼(10.15~11.4), 지자체 워크숍(11.14~11.15),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11.21)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 의견 수렴

〈그림 2-2〉 제3차 계획 수립 경과



자료: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p.2 재작성

⁵ 2015~2019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p.2

1.2.5. 제3차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

- 농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 농어촌 맞춤형 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 사각을 해소하고, 정주체계별 기능 강화 및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촉진
-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기반 조성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부문별 과제
 -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농어업인 소득 및 사회안전망, 교육여건 개선
 - 주민생활기반 확충과 발전역량 강화, 경제활동 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
 - 문화·관광 육성, 환경·경관 보전, 농어업 작업상 재해안전 등

〈표 2-1〉 새로운 삶의 질 정책 기초

구분	과거	미래	
이념	도시 수준의 생활여건을 위한 도-농간 격차 완화	농어촌다움·농어촌 가치 중시, 주민체감 증진	
정책 대상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지역 공동체, 농어업인, 농어촌 주민	
정책 범위	복지, 교육, 의료 등 필수사회서비스 확충	안전, 환경 등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전 략	농어촌 지원 확대 부문별 정책 강화	농어촌 맞춤형·특화 정책, 분야간 연계·통합 지원	
	사회서비스	HW 정비, 인프라 구축	SW 강화, 사각지대 해소
	공간정비	권역·마을기반 조성, 유형별 차등 보조	중심지 기능 및 마을과의 연계 강화, 先역량 강화와 역량 단계별 지원
	산업·일자리	도시 자본 및 투자 유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농어촌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 순환, 1·2·3차 산업 연계
정책 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중앙정부 중심 지방정부 협력, 관(官)주도	지역·공동체 중심 거버넌스, 민간역할 및 중간지원조직 강화	
정책평가 및 환류	하향식▶상향식	쌍방향 네트워크	

자료: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p.7

〈표 2-2〉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비전	활력 있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어촌 구현	
부문별 목표	1. 보건복지	농어촌 보건복지 서비스 질 제고와 복지 체감도 증진
	2. 교육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
	3. 정주생활기반	공동체 주도의 살기 좋고 편리한 정주기반 및 생활권 구현
	4. 경제활동일자리	농어업농어촌 자원 융복합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5. 문화여가	다양한 문화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6. 환경경관	농어촌다움이 유지보전되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경관 조성
	7. 안전	자연재해 및 범죄·안전사고에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농어촌 조성

자료: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p.8

1.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해

1.3.1.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배경 및 목적⁶

-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농격차 심각
 - 그 동안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의 수많은 정책적 노력 진행
 - 중앙행정기관에서 농어촌에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각각의 소관 업무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
 - 그러나 수많은 정책적 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도시와 비교할 때, 그리고 선진국의 농어촌과 비교할 때 여전히 격차가 줄어들지 않음.

⁶ 충남연구원, 2015, 충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른 실태조사, pp.11~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p.9~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p. 9~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p. 13~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안 및 농어촌 통계기반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농어촌에도 공공서비스 공급 기반이 갖추어졌으나,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에 의해 이제 농어촌에도 공공서비스 공급 기반이 많이 갖추어졌으나 인구의 과소화와 고령화로 인해 도시에 비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국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반면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러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과학적 정책 마련과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목표 설정 및 정책 목표 기준 요구
 -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 마련과 농어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구(김현호 외, 2008; 송미령·김광선, 2009; 송미령 외, 2007; 한표환 외, 2007)
 - 이 외에도 2010년부터 삶의 질 향상 대책에 포함되는 단위사업 상당수가 기초생활권 정책에 의해 통폐합 및 포괄보조화 됨에 따라 중앙정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준거로 삼을 만한 새로운 정책 목표의 기준 제시 요구(김광선 외, 2011)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어느 지역에서든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영국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어떤 지역에서든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받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달성해야 할 주요 서비스의 국가적인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을 의미

- 이러한 대내외적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시행 및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대내외적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10년 7월 「삶의 질 향상 특별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1년 1월부터 동 제도 시행
 - 동 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 규정
 - 이에 따라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가 8개 부문 31개 항목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치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5호)
 - 2013년 8개 부문 31개 항목에서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하여 운용되고 있음.
 - 2015년은 국가차원의 핵심항목과 각 지자체 차원의 선택항목으로 이원화되어 운용(핵심 항목은 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
 - 선택항목은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과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함.

- 현재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개편 및 운용을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기준을 핵심항목과 선택항목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는 방안 논의
 - 핵심항목을 국가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추진 기간(2015~2019)동안 달성할 중기 목표도 함께 지시하는 방안 논의
 -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의 7개 부문 구성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삶의 질 향상 계획의 핵심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등의 가이드라인 준비
 - 또한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을 위한 조례안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목적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이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을 근거로 삶의 질 향상 계획에서 달성해야 할 계획 목표로 수립하고 이행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2-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이해

구분	내용
개념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교육·의료·안전·문화 등 공공서비스 항목별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7개 분야 17개 항목별 국가 최소기준을 선정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체감도 측정 및 정책 준거로 활용 - 국가관리 핵심항목과 지자체(사도)관리 선택항목으로 구성
활용	매년 138개 농어촌 시·군을 기본단위로 기준달성 정도를 파악·분석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자원배분 및 신규정책 발굴 등에 활용
법적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법(약칭)」 제 44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운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자료: 농식품부, 2018, 2018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요, p.1

1.3.3.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 및 내용⁷⁾

- 2018년 현재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총 7개 부문 17개 핵심항목으로 구성됨
 - 2018년 현재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총 7개 부문 17개 핵심항목으로 구성됨.
 - 매년 138개 농어촌 시·군을 기본단위로 기준달성 정도를 파악·분석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자원 배분 및 신규정책 발굴 등에 활용

⁷⁾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9~20

- 2011년 8개 부문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가 국가에서 운용하는 핵심 항목(7개 부문 17개 항목)과 지자체 자체 지표 선정·운용(지자체별로 부문과 항목이 상이)하는 선택항목으로 수정되어 운용됨.

〈표 2-4〉 2018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부문	핵심항목	세부내용
1.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2) 응급시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교육여건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6)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3.정보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10)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4.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6.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안전 (생활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16) 경찰출동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7)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자료: 정도채 외, 2017,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9~20

1.3.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을 위한 전문지원기관 운영⁸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을 위한 자문기구와 전문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한 정부부처, 전문가, 농어촌 주민이 참석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협의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하였으며, 제도 운용 및 개선에 대한 자문 및 협의 기능 담당
- 2012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제도 개선에 대한 지원 업무 수행
 - 2012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전문지원기관의 고유 업무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제도 개선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전문지원기관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공통 추진 업무와 특별 추진 업무로 구분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매년 공통으로 추진하는 연차별 공통 추진 업무와 현안과 관련된 주제 또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연차별 특별 추진 업무로 구분됨.

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2

2. 농어촌서비스기준 추진현황⁹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는 매년 공통으로 추진하는 연차별 공통 추진 업무와 현안과 관련된 주제 또는 부문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연차별 특별 추진 업무로 구분됨.

2.1.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1차례 수정에 의한 개정과 1차례 제도개편 추진

- 2009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운용을 위한 사전연구를 수행하여 지표 8개 부문 31개 항목의 초안 마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9년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을 위한 지표 8개 부문 31개 항목의 초안을 마련함.
 -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통계자료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생활권 시·군의 공공서비스 공급실태 분석, 8개 시·군의 공공서비스 이용실태와 수요를 분석하여 기준을 도출
 - 100명의 관련 전문가 대상의 타당성 의견 수렴, 지역주민 공무원 여론 수렴, 특정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적합성 검증 과정을 거침.
 -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농어촌서비스기준 마련

※ 농어촌서비스기준 정의

-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적 서비스의 항목과 수준

⁹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발전방안 협의 자료(2018.05.24.), pp.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13~15

-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8개 부문 31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정부에서는 2011년부터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업무위탁을 통해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하도록 함.
 - 각 항목의 세부기준과 2014년 목표치를 제시하여 이행실태 점검·평가 후 각 시·군별·항목별 순위를 제시하였음.

※ 참고. 2011년 이행실태 결과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후 각 항목별 순위를 제시함.

□ 충남 아산시

항목	시군 달성률	농어촌 전체 달성률	표준 편차	순위	항목	시군 달성률	농어촌 전체 달성률	표준 편차	순위
취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비율 90% 이상	90.4	76.0	12.4	13	취약계층 노인 주 1회 이상 계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	92.7	27.3	17.0	3
읍부 도시가스 보급률 50% 이상	70.9	36.2	27.8	11	청소년 수련관·문화의집·수련원 1개 이상	유 (1개소)	89.3 (127/140)	-	-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0.7	0.6	0.8	13	읍·면별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등학교교실 운영	100.0	97.9	6.1	-
마을공동시설 운영비 지원 행정리 비율	93.0	81.2	29.4	88	읍·면별 (소규모)보육시설 운영	100.0	69.9	22.4	1#
공동시설 상설프로그램 지원 행정리 비율	14.5	26.5	36.8	6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	유 (1개소)	78.6 (117/140)	-	-
면부 상수도보급률 75% 이상	64.9	51.5	22.3	3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서비스 제공	가능	90.9 (117/130)	-	-
하수도보급률 71% 이상	50.5	73.2	22.6	90	30분 내 응급현장 도착	100.0	99.8	2.2	-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버스3회 이상 운행 마을 비율	89.4	82.4	15.2	44	5분 내 화재현장 도착 비율 55% 이상	78.9	51.4	27.7	29
도서지역 1일 1회 여객선 운항	해당없음	97.4 (37/38)	15.1	-	행정리 방범용 CCTV 설치	8.9	11.0	8.3	76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인도 구분	100.0	19.0	28.1	1#	항포구 방범용 CCTV 설치	해당없음	5.2 (112/172)	14.9	-
적정규모 학교 육성	0.0	6.7	7.8	72#	10분 이내 사건 현장 도착	100.0	100.0	-	-
우수고교 1개 이상 육성 (1개교)	유 (1개교)	85.7 (127/140)	-	-	읍·면 도서 열람/대출 가능	72.7	52.2	25.3	33
폐교 시 주민의견 수렴	0.0	97.8	50.0	-	읍·면 문화원·문예회관 운영 (1개소)	유 (1개소)	98.6 (137/140)	-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70% 이상	83.6	72.4	11.6	72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 관람 불가 (0.9회)	불가 (53/115)	46.1 (53/115)	-	54#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유	60.7 (87/140)	-	-	분기 1회 이상 전문공연 관람 (사설없음)	불가 (사설없음)	70.0 (87/140)	-	-
읍·면별 평생교육시설 1개 이상	45.5	18.9	16.6	10	읍·면별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36.4	14.0	24.0	19
모든 주요과목 1차진료 가능	가능	79.4 (108/136)	-	-	초고속망 구축률 100%	80.8	67.9	17.1	15
마을별 월 1회 이상 순회방문	0.0	0.2	0.9	-	광역통합망 구축률 80% 이상	74.1	61.6	19.1	19
읍면별 의약품 구입 가능	100.0	99.6	2.0	-					

자료: 김광선 외, 2015,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2012년도 2011년과 동일하게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부문별·지역별 비교·분석 수행10

- 각 항목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로 전환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실태를 종합적·부문별·지역·점검·평가를 위해 공표통계와 관계부처 내부자료, 행정조사를 통한 자료 구축
- 2013년 8개 부문 31개 항목에서 2013년 ‘안전’ 부문과 그 하위의 ‘경찰순찰’ 항목을 신설하여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운영
 - 2013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수정안은 현행 8개 부문 31개 항목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을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재구성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지역 적합성과 달성 가능성, 그리고 농어촌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 수요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2015~2019)에 시행을 고려할 중·장기적인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정
 - ‘안전’ 부문을 신설하여 ‘경찰 순찰’, ‘방법설비’(현행 CCTV), ‘경찰 출동’(현행 경찰서비스) 항목 포함
 - 신설 항목 외에도 교육 부문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항목과 보건의료 부문의 ‘순회방문’ 항목, 안전 부문의 ‘방법설비’ 항목의 세부내용을 일부 변경
- 2014년에는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시행될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¹¹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15~2019) 시행에 앞서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을 마련하여 제시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기준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선택기준으로 이원화

¹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 7

¹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 32개 항목을 국가가 직접 제정·운용·관리하는 17개 핵심항목으로 축소
 - 지자체 지역 실정에 맞는 선택항목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도록 농어촌 서비스기준 운용방식을 변경
- 2015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전국 핵심항목과 각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으로 이원화되어 점검·평가·관리됨.
-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핵심항목은 도시, 농어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 질 수준이며 동시에 농어촌 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농어촌 시·군에 적용되는 ‘국가 최소 기준’(national minimum)
 - 핵심항목은 중앙정부가 제시·관리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으로서 모든 농어촌 시·군이 적용하는 ‘국가 최소 기준’으로 운용
 - 선택항목은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과 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함.
- 2015년 개선된 핵심 항목은 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지표 부문 구성을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부문 구성과 일치되게 구성함.
- 핵심 항목은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의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등 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 핵심항목

- 보건·복지(4): 진료서비스, 응급서비스, 노인, 영유아
- 교육(2): 초등·중학교, 평생교육
- 정주생활기반(5): 주택, 상수도, 난방, 대중교통, 광대역통합망
- 경제활동·일자리(1):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 문화·여가(1):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환경·경관(1): 하수도
- 안전(3): 방법설비, 경찰출동, 소방출동

-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기간(2015~2019) 내 달성해야 하는 5년간의 중기목표 제시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일환으로 제도화되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개 부문으로 구성된 삶의 질 향상 계획과 달리 9개 부문으로 구성·운동되어 정책적 연계의 부족과 정책 이해에 대한 혼란 등을 초래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을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7개 부문에 맞추어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안전 부문으로 구성
- 2018년 담당 부처와 핵심 항목 개정을 논의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통해 변경을 추진 계획
-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통계자료 구득이 어려운 항목(주택, 경찰순찰, 소방)의 개편 예정

〈표 2-5〉 농어촌서비스기준 연차별 공통추진업무 현황

구분	연차별 공통추진업무	지표 및 제도 개편 현황
2011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득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8개 부문 31개 항목
2012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② 핵심 이행지수	
2013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득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9개 부문 32개 항목

구분	연차별 공통추진업무	지표 및 제도 개편 현황
2014	(1) 점검통계를 활용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① 공식통계 구축 ② 부처 협조를 통한 통계 구축 ③ 지자체 행정조사 실시 (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 ① 종합·부문별 이행지수	
2015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주요 업무: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제도 개편 - 국가관리 핵심항목 - 지자체 관리 선택항목 7개 부문 17개 세부항목
2016~ 2017	(1)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주요 업무: 핵심 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및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운영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 14

2.2. 연차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추진 실태

- 2011년~2014년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이행실태 점검평가와 연차별 특별추진 업무 수행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시행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차별 공통추진업무’를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와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를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연관 업무를 발굴하여 수행
- 2015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9개 시·도 연구원이 이원화 되어 이행실태 점검·평가
 - 2015년부터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가 관리의 ‘핵심 항목’에 한하여 직접 이행실태를 점검·평가
 - 광역자치단체의 ‘선택 항목’은 9개 시·도연구원이 해당 지역의 선택 항목에 이행실태 점검·평가(2016년 7개 시·도연구원 참여)

〈표 2-6〉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평가 연구 담당기관

구분	연구기관	역할
핵심항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9개 시도연구원과 협의체를 구성 • 9개 시도연구원과 선택항목 관련 협동연구 진행
선택항목	경기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발전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항목 선정·제정 •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18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각 시·도 연구원 MOU 체결하여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자체 선택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평가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를 위해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9개 시·도 연구원 간 MOU를 체결하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 선택항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각 시·도 연구원이 협동연구를 통해 각 지역의 여건과 발전전략에 맞는 선택항목을 선정·제정하고 운용하는 기틀을 마련¹²

2.3. 연차별 특별추진 업무

-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는 농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심층연구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연차별 조사로 추진되었음.
 - 사례지역 심층조사 실시 및 수범사례 제시
 - 주요 부문별 심층조사 실시

¹²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17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을 위한 현장적합성 및 만족도, 정책수요 조사 실시
 - 농어촌 주민 및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 실태와 향후 정책 수요를 분석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실시 등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제시
- 2015년 지자체 자율 선택항목 도입의 제도개편 이후 연차별 특별추진업무로 시도별 선택 항목 제정 및 이행실태 점검·분석 실시
- 2015년 9개 시도연구원과 함께 선택항목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평가 지원
 - 2016년과 2017년에는 7개 시도연구원의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지원함.

〈표 2-7〉 농어촌서비스기준 연차별 특별추진업무 현황

구분	연차별 특별추진업무
2011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삶의 질 향상 계획 반영 실태 분석 사례지역 심층조사(화천군·장흥군) ① 시·군 단위 삶의 질 향상계획 분석 ② 기준 항목 관련 사업예산 분석 ③ 읍·면 단위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조사
2012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 농어촌 도로·교통 부문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안 마련 - 농어촌서비스기준 현장 적합성 및 달성가능성 조사 - 농어촌주민의 공공서비스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모범사례 발굴
2013	농어촌서비스기준 주요 부문별 연구 - 문화 부문 심층연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 전문가 평가 조사 - 농어촌서비스기준 관련 공공서비스 향상 여부에 대한 주민 만족도와 서비스 수요 조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중장기 운영방향 제시

구분	연차별 특별추진업무
2014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 마련 - 개편안의 핵심 항목 및 선택 항목 구성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선 방안
2015	※ 제도 개편 - 선택항목 점검·평가 기관 지원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9개 시·도 연구원 지원 - 주요 업무: 선택 항목 제정 및 이행실태 점검분석
2016~2017	이행실태 점검·평가 기관: 7개 시·도 연구원 지원 - 주요 업무: 선택 항목 수정 및 목표치 확정, 선택 항목 이행실태 점검·분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 14

제 3 장

제도 개선을 위한 국·내외 사례

1. 국내 사례

1.1. 국가균형발전정책¹³

1.1.1. 목적 및 정책영역

-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목 적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관련계획 수립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시·도 발

¹³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www.balance.go.kr)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

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
-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을 수립

○ 계획 및 정책 영역

-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및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1.1.2. 추진체계(조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함.
-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함.

○ 관련 기타 조직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두고,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단장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
-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 설치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군·구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음.

1.1.3. 예산 및 재원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
-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1.1.4. 시사점

- 공간 중심의 지역 균형정책의 추진
 -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중요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어 추진되고 있음.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운영으로 위상제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갖는 위상을 높이고 관련정책의 추진에 원동력으로 작용

- 삶의질향상정책과 목적 및 정책 영역 등에서 매우 유사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삶의질향상정책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음.
 - 정책 영역에 있어서도 기초생활, 산업 및 일자리, 교육, 복지, 거점육성, 도농간 상생 등의 유사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부처의 범주(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도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삶의질향상정책과 거의 동일함.

〈표 3-1〉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의 비교

구 분	국가균형발전정책	농어업인 삶의질향상정책	비고
근거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목 적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동일
관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 시·도 발전계획(5년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5년 단위) 	
계획 및 정책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지역혁신체계 • 주민 생활기반/발전역량 강화 • 지역산업/일자리/지역금융 • 지역교육/인재양성 • 지역 과학기술 진흥 • 국가균형발전 거점/교통·물류망 • 지역 문화·관광/환경보전 • 지역 복지/보건의료 • 개발촉진/도농격차 완화 • 공공기관지방이전/혁신도시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복지증진/사회안전망 • 고령농어업인 소득/작업환경 • 농어촌 교육 • 농어촌 기초생활여건 • 농어촌 자연환경/경관 보전 • 농어촌산업 육성 • 도농간 교류 •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유사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소속 - 34명 이내의 위원 구성 - 간사: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총리 소속 - 25명 이내 위원 구성 - 간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구 분	국가균형발전정책	농어업인 삶의질향상정책	비고
위원회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 등	거의 동일
관련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기획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사무국 기능 • 국가균형발전지원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설치 • 국가균형발전지원팀: 국가균형발전사업단이 설치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에 설치 가능 •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도 및 시·군·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협의회 또는 수산업·어촌정책협의회가 위원회 기능 수행 가능 	
재정/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지방비 지원	
추진체계	사업평가 /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이행실태 점검 등	

1.2.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¹⁴

1.2.1. 배경 및 개념

- (사업배경)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앞서 중앙-지자체간 협업방식의 운영·검증 및 체계적인 제도설계를 위해 시범사업(프로젝트) 실시
 - 공모를 통해 우수한 시범사례를 발굴하여, 가시적 성과 조기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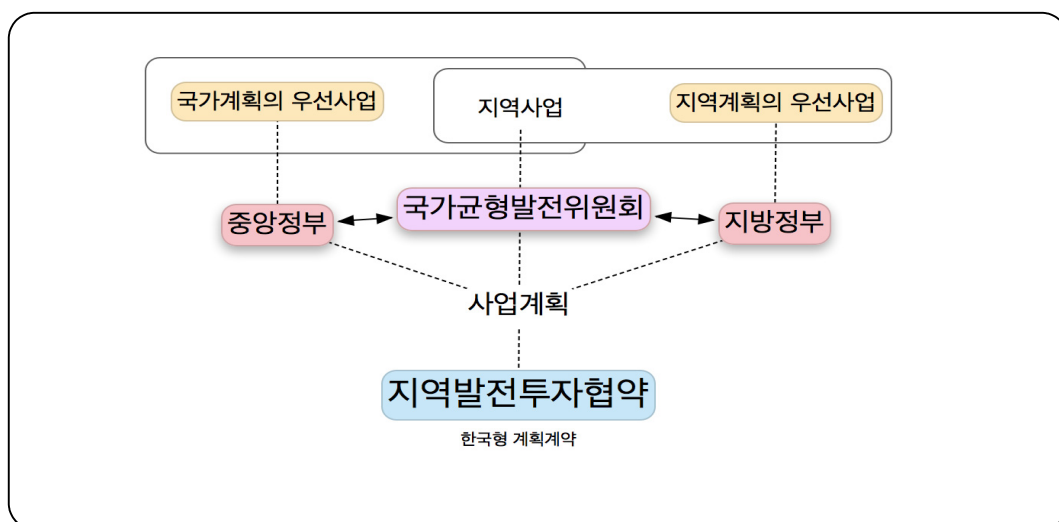
¹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9,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안)

○ 사업의 목적

-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주도적·자율적으로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으면 중앙에서는 다부처·다년도 사업을 포괄보조 형식으로 안정적으로 지원
- 부처별 산발적 칸막이사업 → 지역주도의 종합 패키지사업
-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원

○ 사업의 기본방향은 부처간·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한 중복방지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정부와 부처간 수직적 통제·의존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

〈그림 3-1〉 지역발전투자협력 개요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9,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안), p.2

1.2.2. 사업의 추진근거

- 「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9조
 - 균형발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하고, 균특회계를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
-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 국정과제)
 - 균특회계를 개편하여 지역자율성을 확대하되, 정부-지자체 간의 협약제도 시행을 통해 성과평가 등 책임성도 확보
-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18.2.1. 균형위 발표)
 - 시·도와 관계부처가 계획내용·재원배분 등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포괄보조형식으로 안정적 지원
 - 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추진('19년~)

1.2.3. 대상사업과 규모

- (대상지자체) 수도권 제외 14개 광역지자체별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하되, 시범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기초지자체 대상
 - 다만, 기초지자체간에 연계한 사업계획 우선 선정(혹은 가점부여) 가능
- (사업규모) 각 사업계획에 총 100억 원* 내외 국비지원
 - 다년도 사업기간 동안의 총 국비지원 규모
- (지원방식) 14개의 광역지자체별로 2개의 사업계획을 균형위에 제출, '19년에는 총 10개 내외의 사업계획을 선정, 지원
 - 광역지자체별 총 사업비의 50~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는 나머지 30~50%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분담

- (사업기간)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1.2.4. 사업의 추진 체계

- 사업선정 전: 균형위 주관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방향 마련
- 선정 후~계획보완: 시범사업 선정 후 범부처 컨설팅 그룹 주관으로 협의·조정 통해 계획보완
- 협약체결: 균형위 심의·의결 후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 체결
- 사업추진: 균형위·관련부처 공동으로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애로사항 해소 지원
 - (범부처 참여) 균형위(총괄, 사업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운영지침 마련, 예산관리),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컨설팅단을 구성, 지자체 요청 시 통합 컨설팅 실시

1.2.5. 세부사업 추진 절차

- (추진절차) 사업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시범사업 신청 (기초지자체 → 광역지자체 → 균형위) - 시범사업신청서 접수 및 중복성 검토 - 시범사업 선정(시범사업 대상 광역지자체 선정) - 시범사업 컨설팅 - 투자협약 체결 - 예산 배정 - 사업 추진
- 세부사업 추진 절차 중 투자협약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광역지자체 장: 선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협약안)을 작성하여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위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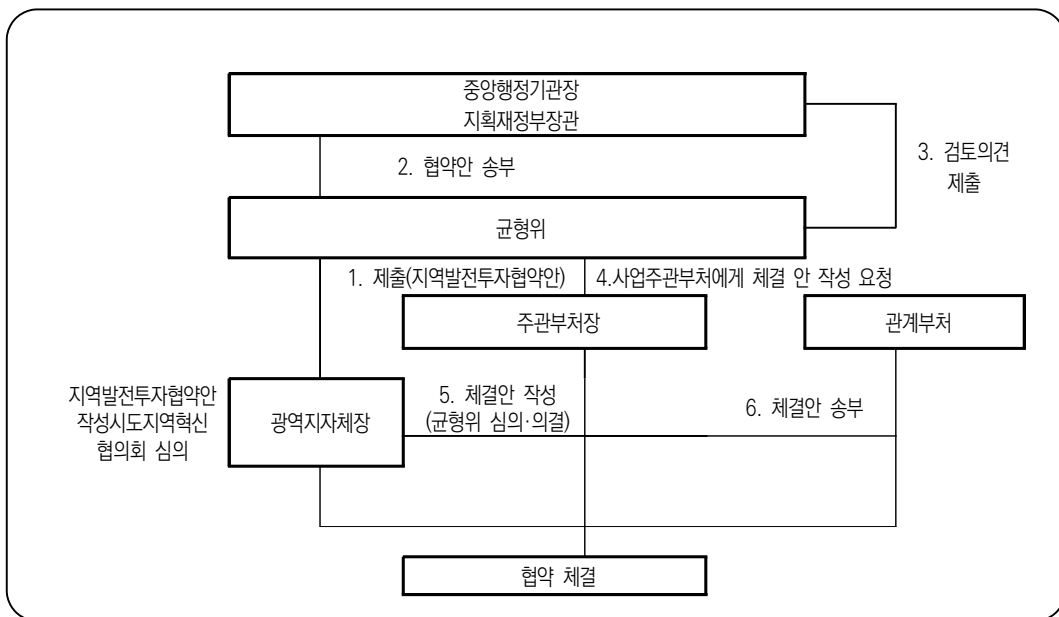
- 균형위: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 송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균형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균형위: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안을 작성할 주관부처를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
 - 주관부처의 장: 협약안을 제출한 광역지자체의 장과 협의하여 균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 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송부
 - 주관부처,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동으로 체결 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
 - 시·도지사: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
- (예산 배정) 중앙행정 기관에서 사업추진 지방자치단체로 예산 배정
- 국가보조금은 시범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보조금 사용 시 적용되는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

1.2.6.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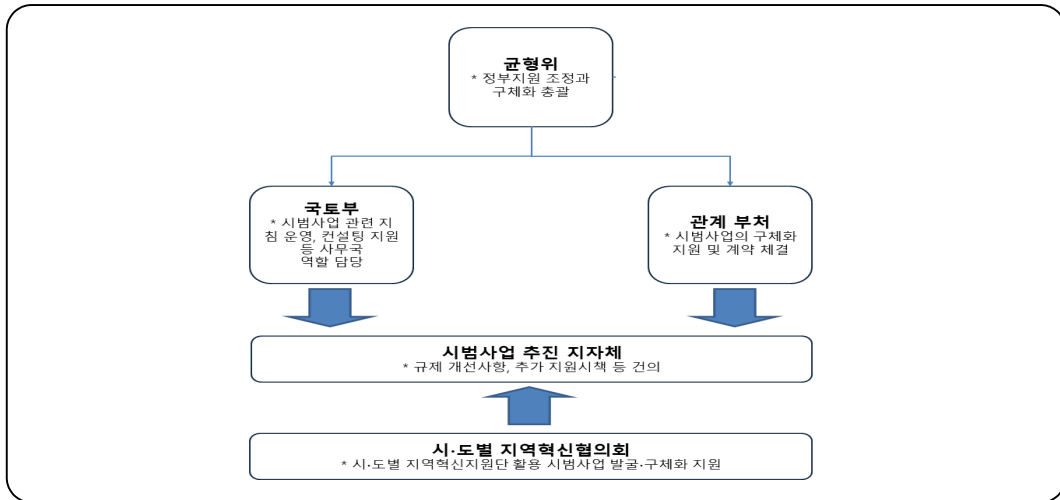
-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책 사각지대의 수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
 - 공모방식 등으로 인한 지자체간의 과도한 경쟁방식을 탈피하여 지자체의 현장수요를 반영하는 자율적인 사업 추진 가능
- 예산, 중앙-지자체간의 협업방식, 추진 시스템 마련되어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 가능

- 부처간·사업간 연계 강화, 중앙-지자체간 협업방식 도입으로 사업 추진의 원동력 확보
- 시·도와 관계부처가 계획내용·재원배분 등에 대해 협약 체결로 실행력을 담보
-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포괄보조형식으로 안정적 예산 확보 가능

〈그림 3-2〉 투자협약체결 절차



〈그림 3-3〉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체계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9,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안), p.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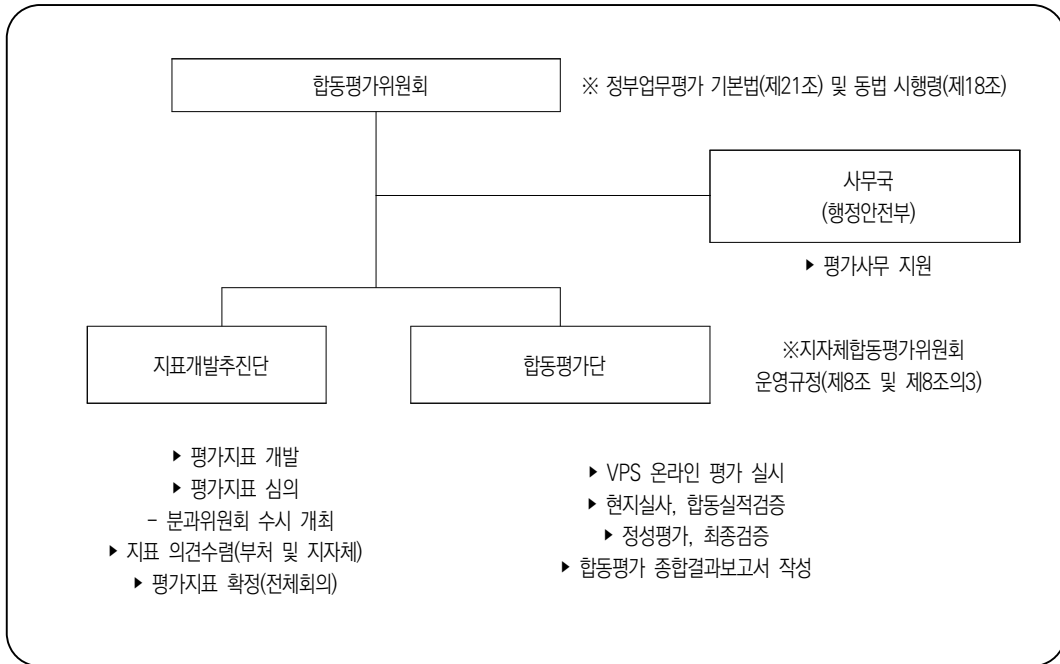
1.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¹⁵

1.3.1. 평가 개요

-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
 - 평가 대상은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평가 운영체계는 합동평가위원회는 지표개발추진단과 합동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개발추진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운영하고, 합동평가단은 온라인평가, 실적검증, 현장실사 및 최종검증의 역할을 담당
 - 사무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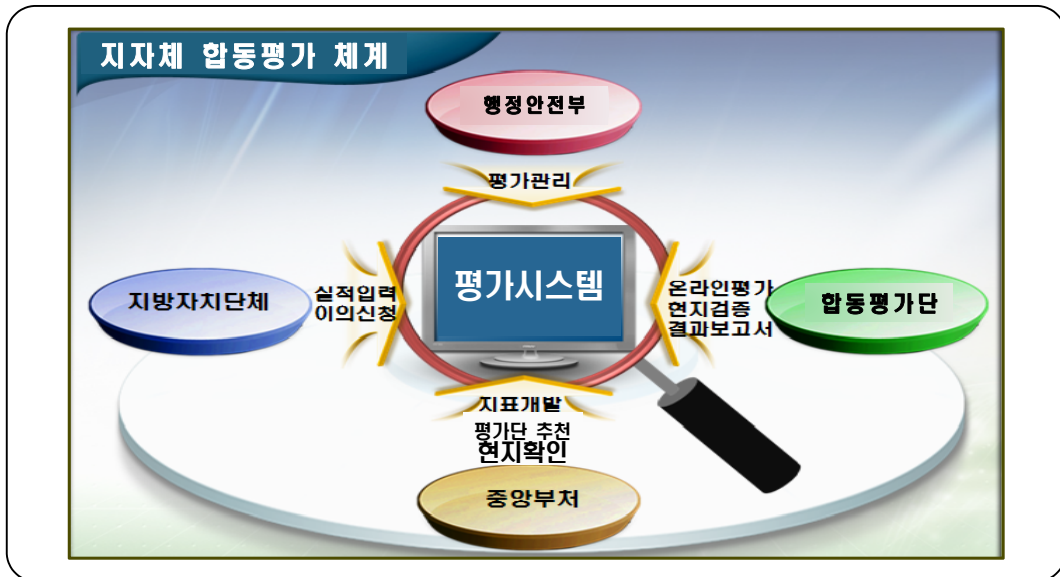
¹⁵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계획(안)

〈그림 3-4〉 운영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계획(안),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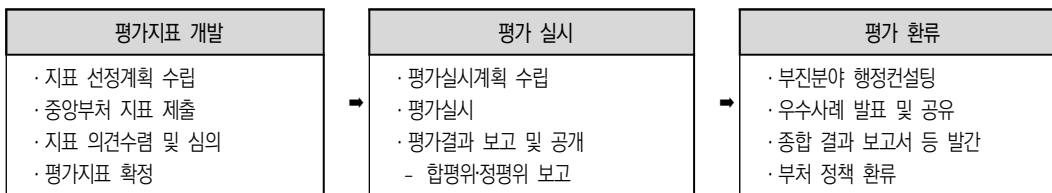
〈그림 3-5〉 지자체 합동평가 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계획(안), p.2

1.3.2. 평가 추진체계

- 평가지표 개발 - 평가 실시 - 평가 환류의 추진체계를 가지고 있음.
 -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지표개발추진단 50명(민간전문가) 매년 1월~ 12월 위촉, 지표 선정계획 수립, 중앙부처 지표 제출, 지표 의견수렴 및 심의, 평가지표 확정
 - ‘평가 실시’는 합동평가단 200명 내외로 구성되어 매년 3월~익년 3월까지 위촉, 평가실시계획 수립, 평가실시,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 ‘평가 환류’는 부진분야 행정컨설팅, 우수사례집 공유·확산,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정책 환류



자료: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계획(안), p.1

1.3.3. 평가 방법

- 평가 지표는 156개이며 정량지표 123개, 정성지표 33개로 구성
 - 평가 결과는 평가지표별 목표달성도(정량), 우수사례 선정(정성)임.
- 평가 절차는 실적입력, 정량지표 평가, 이의신청 심사, 정성지표 평가, 최종 검증, 결과보고로 진행
 - 정량평가: 중앙부처에서 입력한 시·도 실적 통계자료
 - 정성평가: 합동평가단 평가위원이 시·도에서 입력한 정성지표 실적을 평가하여 지표별 우수사례 1건 선정
 - 주민 만족도 조사: 주요시책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 조사 실시, 재정인센티브 지급 시 반영

- 현지 실사: 시·도 상호간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현지 방문 검증
- 최종 검증: 최종검증 T/F 실적 및 점수 최종 확인

실적입력 (1~2월)	정량지표 평가 (3월)	이의신청 실사 (4월)	정성지표평가 (5월)	최종검증 (6월)	결과보고 (6월 말)
시·도에서 정성평가 실적입력	중앙부처가 입력한 실적에 대해 목표 달성여부 평가	정성평가 이의신청건에 대한 실사	분과위원회(1차), 국민평가단(2차)에 서 정성지표 평가	합동평가단 총괄T/F에서 실적 최종 확인	합동평가 결과합평위· 정평위 보고

자료: 행정안전부, 2019,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계획(안), p.3

1.3.4. 평가 결과 및 사후관리

- 평가 결과
 - 지자체별 정량지표 목표달성도를 시·도로 구분하여 공개
 - 정성지표별(33개) 우수사례 공개
 - 공개방법은 언론보도 및 지자체 중앙행정기관으로 통보
- 사후 관리
 - 목표달성도가 낮은 지표에 대해 행정컨설팅을 실시함.
 -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해 우수사례 발표회와 사례집 발간 사업 추진
 - 우수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함.
 -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정책 개선 등을 파악하여 정책 환류

1.3.5. 시사점

-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
- 지표개발추진단과 합동평가단을 운영하여 평가지표 개발, 평가 실시, 평가 환류의 추진체계
- 평가결과에 대한 언론, 지자체로 통보되며 행정컨설팅, 재정 인센티브 지급
- 강제성을 띠고 있는 시스템 구비, 정책추진의 목표달성도 제고를 위해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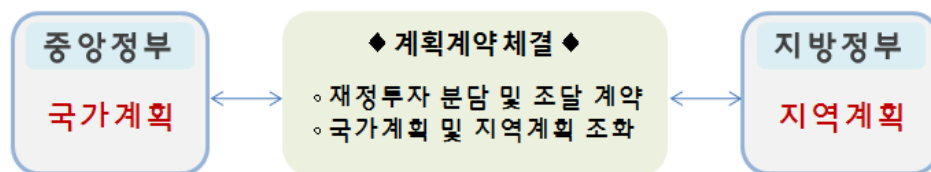
2. 국외 사례

2.1.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 운영사례(Albigeois et des Bastides 지역의 프랑스 농촌계약의 실제)¹⁶

2.1.1. 프랑스의 농촌계약(les contrats de ruralite)이란?

- 프랑스 정부는 2014년 ‘농촌의 기초들’이라는 명칭으로 전개한 7차례의 아틀리에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이어받아 2015~2016년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Comite Interministeriel aux Ruralites, ‘CIR’)를 개최함. 이러한 활동을 통해 농촌에 호의적인 새로운 동력을 추진하고자 하였음.
- CIR(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의 세 차례 위원회 개최 결과로 도출한 104개 정책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공공의 활동을 조화시키고 지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농촌계약(les contrats de ruralite)이라는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함.

◆ 프랑스 계획계약체계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9,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안), p.3

¹⁶ 자료: <http://www,pays-albigeois-bastide.fr/le-contra-de-riralite> 2019월 1년 10일 검색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9,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안), p.3

2.1.2. Albigeois et des Bastides 지역의 프랑스 농촌계약의 실제사례

가. Albigeois et des Bastides 지역의 프랑스 농촌계약의 실제사례

- 농촌 계약은 각 지역의 서명 주체로 하여금 지역에 가장 유용한 수단을 결정하고 그러한 수단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함.
- 각 지역의 서명주체
 - 농촌계약은 국가와 계약의 시행자인 PETR(국토 및 농촌 균형 거점) 등이 체결함.
- 농촌 계약은 각 지역의 서명 주체로 하여금 지역에 가장 유용한 수단을 결정하고 그러한 수단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2016년 말까지 농촌계약을 고안하고, 2017년 6월 말까지 계약 체결하도록 함.
- 농촌계약의 기간은 2017년~2020년 4년간의 첫 주기를 포함하여 6년임.
- 2014년부터 시작된 농촌 계약은 6개 축를 중심으로 전개
 - l'accès aux services et aux soins;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 la revitalisation des bourgs-centres (notamment à travers la rénovation de l'habitat et le soutien aux commerces de proximité...); 주택개량, 근접교역 서포트를 통한 중심 부르 활성화 (부르: 장이 서는 큰 마을 이나 부락)
 - l'attractivité du territoire (économie, numérique, tourisme...); 경제적, 디지털, 관광 분야의 지역 흡인력 강화
 - les mobilités; 지역 이동 (강화)
 - la transition écologique; 생태적 전환

- la cohésion sociale: 사회 통합 강화
- Albiogeois et des Bastide 지역은 Midi-Pyrénées 레지옹(광역자치체로서 프랑스의 총 13개 레지옹 중 하나)에 속해 있는 데파르트망 du Tarn(중역자치체로서 96개 중 하나)에 속해 있는 지역임.

나. Albiogeois et des Bastide 지역의 농촌 협약

- 정책 1: 지역주민이 새로운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하기
 - 영유아를 위한 다목적 공간 조성
 - 공공 서비스 집 확대
 - 다학제적인 보건소 건립
- 정책 2: 중심 부르 활성화와 도심 중심부 활성화
 - Carmaux 지역 중심부의 지속적인 구획 조정
 - (부드러운) 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핵심역할을 하는 Réalmont, Villefranche d'Albi, Monestiès, Le Garric 지역 중심 부르의 재개발
 - Mirandol 부르의 곡물 교역 지속하기
 - 공동 주택의 개량 및 건설
- 정책 3: Développer l'attractivité du territoire: 지역 흡인성 발전시키기
 - Carmaux 지역의 활동구역 개발
 - 기업 유치를 위한 Croix de Mille, Blaye-les Mines, Lombers, Alban 지역의 활동 지역 개발
 - 경제적인 것과 관광적인 면의 프로그램 개발과 포괄적 연구
 - Portes du Tarn-Nord의 지역 생산물 유통과 관광지로서의 위상제고를 포함한 도시재생
 -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자연 사이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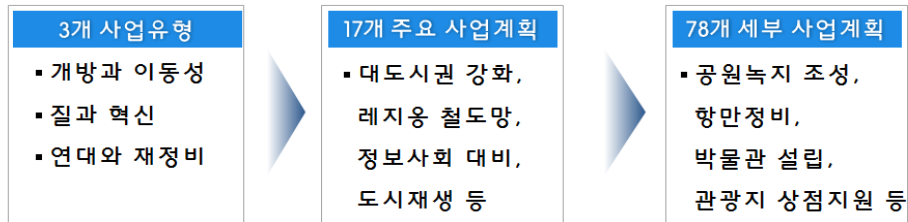
- 박물관의 재발견 및 발전시키기: 지역의 조형예술센터 (Centre Art du Verre du Carmausin), Cordes 지역의 현대 미술관 등 (Musée d'Art Contemporain de Cordes)
 - Carmaux, Ambialet, Alban, Réalmont 지역의 관광안내 창구 조성
 - Cordes sur Ciel 지역의 역사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을 위한 애니메이션 공간창설
- 정책 4: Faciliter les mobilités et développer les usages numériques: 디지털 사용을 발전과 이동 촉진
- Lombers 지역과 Cabannes 지역의 연성 관계의 창출
 - 관광지 급속 충전을 위한 장치 설치
- 정책 5: S'engager dans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 녹색 성장을 위한 활기찬 이행
- 공공 건물의 다목적 기능이 있는 공간 개선
 - 재생 에너지의 생산 라인 구축
 - 공공 건물의 전기차 배치
- 정책 6: Renforcer la cohésion sociale: 사회통합 강화
- 애니메이션과 공동체 정체성 함양을 위한 공연장 조성
 - Valence d'Albi 지역의 새로운 시청각 실 건설 및 스포츠 장비 설치
 - Cagnac 지역의 라커룸 설치
 - Alban 지역의 다목적 스포츠 공간 조성
 - Villefranche d'Albi 지역의 스포츠 룸 리모델링
- 정책 7: Mettre en place et animer le Projet Alimentaire Territorial: 지역 곡물 프로젝트 계획 및 실시
- 지역 생산물의 곡물 소비 총체적 연구

-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야채 재배 생산 라인 창설
- Tarn 계곡안에 농업 관개 시설을 위한 토지 선행연구

※ 참고. 국가 ↔ ‘노르-파드칼레’ 레지옹간 체결계약 사례 (‘07.~’13.)

- 계약주체 : 프랑스 중앙정부 ↔ 노르-파드칼레 레지옹
- 지원전략 : ① 지역경제촉진 ② 환경재생 및 자연유산 보존
③ 해당지역의 유럽 Hub化 ④ 지역적 매력 강화 ⑤ 평생교육
- 재정규모 : 약 3.5조원(7년간)

◆ 노르-파드칼레 레지옹 계획계약 사업계획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8.9,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안), p.3

제 4 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실태 및 문제점

1.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문제점¹⁷

1.1. 조직의 문제

- (삶의 질 위원회의 낮은 위상) 삶의 질 위원회의 위상 및 실효성 문제
 - 현재 삶의 질 위원회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위원장 국무총리,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하나 실제로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전문추진기관의 부재) 도 및 시·군에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조직부

¹⁷ 정도채 외, 2017,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61~64,
김광선 외, 2016,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p.68~73,
윤정미 외, 2015, 충남형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따른 실태조사, pp.23~29

재

- 현재 농정국 및 농정 담당과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제도의 항목의 경우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책의 추진 및 이행 점검을 위한 자료 협조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타 광역자치단체에서와 같이 별도의 전담 조직(예, 삶의 질 향상 정책과)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획 예산 담당부서와의 연계 문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이행제고를 위한 기획·예산 담당부서와의 연계 미흡
- 도 및 시·군 차원의 선택항목 지표는 농정분야만을 지표로 선정되지 않고 삶의 질 분야인 다양한 분야로 선정되기에 이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부서에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업무의 경우 기획·예산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전담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청 있음.
- (협력적 연계 체계 부재)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관계 부처 간 연계 협력과 중앙-지방 간, 관련주체간 연계 미흡
- 국가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농어촌 주민, 전문가, 지역현장 주민 및 단체 등이 정책 추진을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제도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이에 대한 조직이 운영되지 않았음.
 - 부처 간 연계 협력이 부족, 중앙-지방간 연계 협력이 부족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예산, 조직 등)이 제공되지 않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미흡

1.2 제도의 문제

- (제도의 홍보 문제)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에 대한 교육·홍보·학습 부족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생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이행을 제고해야 하는 공무원과 직접 수혜자가 되어야 할 농어촌 주민들이 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현재 연 1회 지표에 대한 점검만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담당 공무원의 경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요구되는 지표 값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음.

- (도차원의 운영 틀 부재)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조례 없음.
 -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을 유도·촉구하는 방안으로서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운영을 유도·촉구하기 위함.

- (실천적 이행계획에 대한 제시 없음)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연차별 이행 촉진 계획 수립하지 않음.
 - 국가차원의 핵심항목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연차별 이행 촉진 계획을 매년 삶의 질 시행계획에 구체적 내용으로 담아내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음.
 - 지자체의 경우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실천적 이행 촉진계획을 ‘삶의 질 향상 계획’ 및 ‘시·도 및 시·군 계획’에 포함시켜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임.

- (지자체 정책과의 연계성 없음) 삶의 질 향상 정책과 농어촌 지역정책과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연계 미미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세부 추진과제의 내용에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있지 않음.
 -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과 시·도 계획 내 반영이 낮음.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자체 차원의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일부만을 직·간접적으로 수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이나 이에 근거한 사업추진이 부족한 상황임.

- (국가에서의 적극적 이행제고 부재) 농어촌서비스기준 국가차원의 핵심항목이 매우 저조하게 평가되는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 부재
 - 핵심항목에 대한 평가가 하위인 지자체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행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 점검·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부족한 생활서비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부재)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기반 제공 및 평가·포상체계 부재
 - 예산이 미수반 되어 있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로 하여금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보상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011년부터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였으나 이행실태 제고가 되지 않았을 때 패널티도 부과되지 않고 제고를 위해 실천하였을 때 인센티브도 제공되지 않았음.

1.3. 예산의 문제

- (예산 미수반 제도이며 의무 이행사항도 아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의무 이행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에 지자체 이행 의지가 낮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은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강제 또는 의무 이행사항으로 명시되기 보다는 권고에 가깝게 규정되어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는 법정계획에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제도 운영을 위한 강제적 수단이 없으며 권장의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음.
 - 따라서 삶의 질 향상계획 체계에도 반영이 미약하며 농어촌 지자체의 이행 의지도 높지 않음.
 -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경우 업무량이 많기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지자체의 정책기조에 반영되어있지 않으면 실제로 움직일 수 없는 체제임.
 - 실천을 위한 기반 및 제도가 없는 실정임.
 -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촉진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지급 방안보다는 직접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재원을 지원하는 것 필요
 -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 즉 목표 달성(기준 이행)을 위한 내용을 함께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련 사업 및 예산 역시 큰 틀에서는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자체 차원에서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 꼭 이 제도가 아니어도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임.

1.4. 지표의 문제

- (핵심항목 지표의 항목을 최소화) 국가차원의 핵심항목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
 -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국가적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 최소화하여야 함.
 - 국가차원의 핵심항목이 너무 많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차원에서 이행제고를 위한 실천성이 어려울 수 있음.
 - 정부 예산이나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수많은 항목으로 구성된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모두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지자체 차원의 선택항목 선정 중요) 지자체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선택항목에 대한 선정 과정 및 실천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음.
 - 농어촌에 속한 지역일지라도 지역별 상황이 매우 다르므로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국가적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은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기준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자체 삶의 질 향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선정한 선택항목을 선정할 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없었음.
 - 또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예산을 담보하지 못하는 하나의 지표에 불과하였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기획예산 담당 부서를 포함한 각 실과소가 함께 관련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제고를 위해 실천적·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 (선택항목 지표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불일치) 선택항목 지표는 도·시·군 정책과 일치하여 설정 필요
 - 시·도별로 선택항목을 선정할 경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도·시·군 정책과 일치하여 설정하여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정책의 중요성 및 강제적 의무 이행이 없었기에 정책의 일치성이 고려되지 않은 형식적인 선택항목이었음.

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영실태

2.1. 핵심항목

2.1.1. 핵심항목 주요 내용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¹⁸

- 농어촌서비스기준 개편안의 7대 부문 17개 핵심 항목은 내용 상 22개의 세부기준으로 구분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가 관리의 ‘핵심 항목’에 한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평가
 - 2015년부터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에 따라 핵심항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선택항목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9개 시도연구원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택항목과 관련한 협동연구를 진행
 - 협동연구를 통해 각 지역에 맞는 선택항목을 선정·제정하고 매년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음.
- 핵심 항목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기준별 점검 방법 및 수단이 필요

¹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p.21~23,

- 점검 방법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며, 각 세부기준 점검에 해당하는 통계는 공식통계와 지자체 행정조사 및 중앙행정기관 협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구득함.

〈표 4-1〉 핵심 항목 점검 방법 및 수단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1. 보건 복지	1) 진료서비스	(일반 병원, 한방병원, 산부인과, 치과,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가능한 시·군 수 / 총 시·군 수) × 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	공식통계
			지자체 조사: 산부인과·물리치료실	행정조사
	2) 응급서비스	(현장도착시간 30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청: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 소요시간 자료(혹은 평균소요시간)	협조자료
	3)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수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 × 10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공식통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공식통계
			지자체 행정조사: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 서비스 수혜자 현황	행정조사
4) 영유아	(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있는 읍면 수 / 영유아 3명 이상 읍면 수) × 100	i)행자부: 전국 읍면별 영유아 현황(주민등록인구데이터) ii)보건복지부: 읍면별 보육시설 현황	공식통계 공식통계	
2. 교육	5) 초·중학교	(운영 학교가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읍·면별 학교 현황	협조자료
		위 학교 중 스쿨버스 등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하는 학교 비율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협조자료
	6) 평생교육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수 / 총 읍면 수) × 100	교육부 평생교육통계 지자체조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읍면	협조자료 행정조사
3. 정 주 생 활 기반	7) 주택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 수 / 총 가구 수) × 100	통계청 협조자료	협조자료
	8) 상수도	(시·군별 면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 인구 / 시·군별 면지역 주민등록인구) × 100	환경부: 상수도현황	공식통계
	9) 난방	(읍 내 도시가스 보급 가구 수 / 읍 전체 가구 수) × 100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협조자료
		{소형LPG저장탱크 공급마을 가구수 / (읍면지역 총가구 수 - 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 가구)} × 1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LPG산업협회)	협조자료
10) 대중교통	(도보 15분 내 정류장에서 하루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공식통계	

부문	핵심 항목	점검방법	점검수단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현황	해양수산부: 도서별 여객선 이용실적	협조자료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의 유무 검토	지자체 조사: 준공공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종류	행정조사
	11) 광대역 통합망	(광대역통합망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대역통합망 가입자 현황	협조자료
4. 경제 활동·일자리	12) 농어촌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별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컨설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부	지자체 조사: i) 창업지원센터 유무 ii) 일자리지원센터 유무 iii) 전담인력 고용 여부 iv)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	행정조사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문화예술회관 또는 지방문화원 운영 여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기반시설총람): 시군별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공식통계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횟수) / 12 * 10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원연합회): 전국 지방문화원 문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협조자료
		(공연예술 공연 횟수) / 4 * 10이상일 경우 해당 기준 달성한 것으로 간주	문화체육관광부(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 예술회관별 공연 현황	협조자료
6. 환경·경관	14) 하수도	(시군별 공공하수처리 인구 수 / 시군별 인구 수) × 100	환경부: 하수도 보급현황	공식통계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법설비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수 / 총 행정리 수) × 100	지자체조사: 방법용 CCTV 설치 현황	행정조사
	16) 경찰순찰	범죄취약 지역 마을 별 1일 1회 이상 순찰 여부	경찰청: 범죄취약지역, 마을별 순찰 횟수	협조자료
	17) 소방출동	(시군별 도착소요시간 5분 이내 건 수 / 총 건 수) × 100	소방청: 각 시군별 화재 출동 건별 도착소요시간	협조자료

2.1.2. 핵심항목 점검 통계현황 및 구축현황¹⁹⁾

- 각 세부기준 점검에 해당하는 통계는 공식통계와 지자체 행정조사 및 중앙행정기관 협조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구득함.
- 제3차 계획의 연도별 점검을 위한 통계자료현황은 조금씩 변동이 있음.

¹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p.21~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p.22~2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p. 23~26

〈표 4-2〉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 현황

연도별 통계 현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통계확충범위	구득가능통계	통계보완		기타
					중앙행정기관협조	지자체행정조사	
2015	17	26	32	10	14	8	
2016	17	22	31	10	14	8	
2017	17	22	29	9	14	6	

- 점검을 위한 통계의 기준연도는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로 설정하지만 아직 공표되지 못한 통계는 직전 연도의 그 이전 연도 통계를, 가장 최근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해당년도 통계를 사용함. 덧붙여 5년 단위 공표 통계의 경우 가장 기준년도 대비 최근 연도의 통계자료 2010년, 2015년 자료를 사용하도록 함.

〈표 4-3〉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통계 구축 현황

부 문	항 목	통계명	기준년도			구축 여부
			2015점검	2016점검	2017점검	
보건 복지	진료 서비스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1차 진료 현황	2015	2016	2017	○ (공식통계)
		시·군별 찾아가는 산부인과,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물리치료실 현황	2015	2016	2017	○ (지자체조사)
	응급 서비스	각 응급출동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혹은 행정리별 평균소요시간)	2015	2016	2017	○ (국민안전처협조/ 소방청협조)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신청자현황)	2014	2015	2016	○ (공식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급여자(인정자)현황)	2014	2015	2016	○ (공식통계)
		노인복지시설현황(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용현황)	2014	2015	2017	○ (공식통계)
		노인돌봄종합(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 B)서비스 수혜자 현황	2015	2016	2016	○ (지자체통계)
	영유아	주민등록인구: 만 5세 이하 영유아 현황	2014	2015	2016	○ (공식통계)
		읍·면·동별 보육시설현황(보육통계)어린이집 마설치 읍면 현황	2014	2015	2017	○ (공식통계)
	교육	초등학교	시·군별 초/중학교 현황	2015	2016	2017
학교별 통학수단 제공 현황			2015	2016	2016	○ (교육부 협조)
평생교육		각 시·군, 읍·면별 평생교육기관 현황(비형식기관)	2014	2015	2017	○ (교육부 협조)

부 문	항 목	통계명	기준년도			구축 여부
			2015점검	2016점검	2017점검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시·군·구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현황	2010	2010	-	○/X (통계청 협조)
	상수도	환경부 상수도통계: 상수도현황	2013	2014	2015	○ (공식통계)
	난방	시·군별 읍·면부 도시가스 보급률	2014	2015	2016	○ (한국도시가스협회 협조)
		시·군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현황	2014	2016	2017	○ (산업통상자원부협조)
	대중교통	농림어업총조사(지역조사) 대중교통은행 횡수별 마을 수	2010	2010	2015	○ (공식통계)
		도사지역(시·군)별 본도(읍·면) 현황 및 여객선 운항 현황	-	2015	2016	○ (해양수산부협조)
광대역 통합망	시·군별 광대역통합망 구축 현황	2015	2016	2017	○ (미래창조과학부협조)	
경제 활동 일자리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일자리 센터 등 취업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센터 유무	2015	2016	2017	○ (지자체조사)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2015	2016	2017	○ (지자체조사)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상담 전문인력 고용 여부	2015	2016	2017	○ (지자체조사)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횡수(연간)	2015	2016	2017	○ (지자체조사)
문화 여가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전국문화기반시설총량: 문예회관 및 지방문화원 현황	2014	2015	2016	○ (공식통계)
		시·군 지방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관람 가능한 문화행사프로그램 수	2014	2015	2016	○ (문화체육관광부협조)
		시·군별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수	2014	2015	2016	○ (문화체육관광부협조)
환경 경관	하수도	하수도 인구 및 보급률 현황	2013	2014	2015	○ (공식통계)
안전	방범설비	행정리별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2015	2016	2017	○ (지자체조사)
		행정리별 5대 강력범죄 발생 현황	-	-	-	X (경찰청협조)
	경찰순찰	행정리별 일일 순찰계획 또는 실적 현황	-	-	-	X (경찰청협조)
소방출동	각 건별 주소(행정리) 및 도착소요시간 자료 (혹은 행정리별 평균 소요시간)	2015	-	2017	X/○ (국민안전처협조/소방청협조)	

2.1.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점검 결과²⁰

- 제3차 삶의 질 계획의 17개 핵심항목 이행지수 전국 대비 충남지역의 이행지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표 4-4〉 2017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점검 결과

부 문	항 목	2015		2016		2017		목 표 (2019)
		전국	충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보건·복지	1) 진료 서비스	78.6	93.9	73.9	86.7	71.7	86.7	80
	2) 응급 서비스	98.4	99.6	98.6	99.6	98.6	99.5	97
	3) 노인	71.8	69.6	70.1	68.9	71.1	66.8	80
	4) 영유아	69.7	78.9	69.2	77.6	69.6	77.0	80
교육여건	5) 초등학교	71.1	70.8	71.8	70.8	70.2	70.2	100
	6) 평생교육	21.8	23.0	19.7	21.1	18.9	18.0	40
정주·생활 기반	7) 주택	-	90.0	-	-	-	-	95
	8) 상수도	67.8	56.8	69.3	60.4	71.3	63.2	82
	9) 난방	53.1	47.6	57.0	50.8	60.0	55.2	70
	10) 대중교통	-	92.4	90.4	92.7	88.6	93.4	100
	11) 광대역 통합망	85.8	90.4	92.8	91.2	96.4	92.4	90
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67.3	93.3	67.4	93.3	75.4	80.0	100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91.3	93.3	92.0	100.0	91.3	100.0	100
환경·경관	14) 하수도	80.8	71.6	81.0	72.4	82.0	74.2	85
안전 (생활안전)	15) 방법·설비	35.8	37.9	43.2	44.5	49.3	47.0	60
	16) 경찰순찰	-	-	-	-	-	-	100
	17) 소방출동	41.1	61.7	25.2	38.2	24.6	32.4	55

2.1.4. 핵심항목의 행정 자료 구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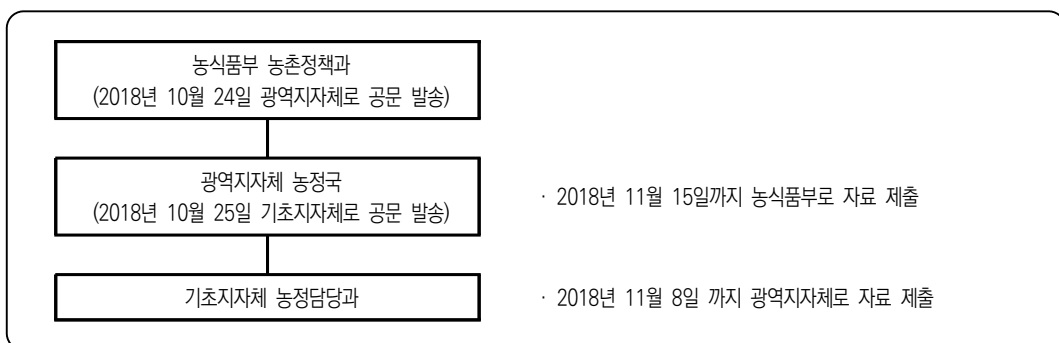
- 2018년 국가차원의 핵심항목 행정조사는 2018년 10월 농식품부에서 광역지자체로 협조 요청을 통해 조사

²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p.51, 56~5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p.57~58, 66~67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를 정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행정조사표 작성·제출 협조 요청
 - 시·군에서 작성할 행정조사표를 제공하여 추진
-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2018년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요청하였으나, 지자체 행정조사 일정을 살펴보면 한 달이 되지 않음.
- 조사항목의 내용이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안전 부분으로 농정국 사업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에서 대응
- 또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교육이 별도로 없이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설명문만을 첨부하여 배포하고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해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조사항목 값 작성에 오류 발생 가능성 있음.

〈그림 4-1〉 행정조사 일정(예. 충청남도)



〈그림 4-2〉 농어촌서비스기준 행정조사표

2018년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행정조사표 [2018. 10]

* 모든 조사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문	항목	서비스기준 내용	조사 항목	응답 단	응답자	조사 기준일	응답 예시	
보건 복지	진료 서비스	사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기 가능하다.	사군내 물리치료실 현황 * 보각지소 및 일반 병의원 내 물리치료실 포함단 물리치료사 상근하는 곳에 한함	()개소	()실과 성명: Tel:	년 월	(5)개소	
			사군내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여부	여 / 부			년 월	여
			사군내 분만가능한 산부인과 수	()개소 분만 가능			년 월	(1)개소 분만 가능
보건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자기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노인들중활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A, B 대상) 수혜자 현황	()명	()실과 성명: Tel:	년 월	(403)명	
교육	평생 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동 지역 제외)	비형식 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의 수 *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평생교육법) *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란 학교 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등 비형식 기관과 관련됨	()개 읍면	()실과 성명: Tel:	년 월	(10)개 읍면	
장주 생활 기반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시간별 준중교통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해당 프로그램 명 (예: 지자체 자체 공동버스, 콜택시 비용 지원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운영 등) * 복지노선 손실보상 등 교부세사업 제외	()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칭》 - - -	()실과 성명: Tel:	년 월	(5)개 프로그램 - 지자체 자체 공동버스 - 콜택시 비용 지원 - 미중복지 운영 - 카풀 조직 지원 - 미니버스 운영 등등	
경제 활동 일자리	창업 및 취업 컨설팅	사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군내 창업보육지원센터 등 창업 및 사업체 운영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유 / 무	()실과 성명: Tel:	년 월	무	
			사군내 일자리센터 등 취업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유무	유 / 무			유	
			사군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상담을 위한 전문인력(전담인력) 고용 여부	여 / 부 ()명			여 (2)명	
			사군내 창업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 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횟수(연간)	연 ()회			연 (7)회	
안전	방범 설비	방범체함을 위해 마을 주요자갈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 (행정리) 수 (동지역 제외)	()개 행정리	()실과 성명: Tel:	년 월	(225)개 행정리	
			사군내 전체 방범용 CCTV 개수 (동지역 제외)	총 ()개			총 (320)개	

2.2. 선택항목

2.2.1. 선택항목 주요 내용 및 이행실태 점검 방법²¹

- 선택항목은 2015년 제도개편으로 인해 새롭게 도입되었음.
 - 2015년 국가차원의 핵심지표와 해당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선택항목으로 이원화되어 이행실태 점검·평가
 -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 담당 기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시·도 연구원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을 선정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평가
 - 2015년부터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전북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제주연구원에서 선택항목 이행실태 선정·점검·평가
 - 2017년 7개 시·도 연구원에서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각 시·도 연구원이 MOU를 체결하여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 선택항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각 시·도 연구원이 협동연구를 통해 각 지역의 여건과 발전전략에 맞는 선택항목을 선정·제정하고 운용²²
- 선택항목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여건과 발전전략에 따라 다르게 선정되었으며, 4개 항목에서 8개 항목으로 다양
 - 지자체 현황을 반영한 항목 선정과 도 시책을 통한 목표치 달성을 기대 하였으나 연계 미흡

²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p.21~23.

²²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17.

〈표 4-5〉 광역자치단체별 선택항목

구분	선택 항목
강원도	소규모 농어촌학교활성화/ 평생교육 여건 기반조성/ 주거환경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 / 문화격차 해소
충청북도	석면슬레이트/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마을기업/ 자살률/ 방법설비
충청남도	석면슬레이트/ 진료서비스 접근성/ 구조구급 접근성/ 노인복지
전라북도	독거노인 돌봄/ 노인치매 돌봄/ 어울림학교/ 그룹홈/ 노인 일자리/ 통합문화이용권/ 문화 동호인/ 어업인 안전
경상북도	복지통합시스템/ 교육 다양성/ 교통 정보/ 귀농·귀촌/ 농업 일자리 정보/ 생활체육
경상남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기초수급자 자녀 멘토링/ 서민자녀 교육지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농가도우미/ 실내수영장 설치
제주도	석면슬레이트/ 대중교통취약지원사업/ 농가도우미/ 마을기업/ 행복 바우처 카드/ 재해보험료 지원

〈표 4-6〉 광역자치단체별 선택항목 부문과 항목 수

구분	교육	정주생활기반 (주거환경)	경제활동 일자리	보건복지	안전	의료	문화여가	교육여건	계
강원도	2	1	1				1		5
충청북도		2	1	1	1				5
충청남도		1		1	1	1			4
전라북도		1	1	2	1		2	1	8
경상북도	1	1	2	1			1		6
경상남도		1	1	1			1	2	6
제주도		2	2		1		1		6

2.2.2.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점검 결과(충청남도 예)²³

- 선택항목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이행에 대한 목표치를 연차별로 수립하여 선택항목별 실적을 점검
- 항목의 내용 및 점검방법을 설정하고, 시·군의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

〈표 4-7〉 충청남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 항목 목표치

구분	항목	내용	점검방법	'15년 실적	목표치				
					'16	'17	'18	'19	
주거	1)주거환경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사업추진 수/전체 주택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 × 100	7.2%	11.7%	14.0%	16.9%	19.8%	
의료	2)진료서비스 접근성	면지역의료시설 접근성을 40% 이상으로 한다.	1차이상 의료시설 혜택받는 법정리 비율 (보완지표)의료 취약 마을에 보안적인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시행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수/ 전체 면지역 법정리 수) × 100	22.1%	23%	24%	25%	25%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 /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면지역 법정리 수)× 100	5.6%	5.6%	6.4%	7.2%	8.0%	
안전	3)구조구급 출동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95% 이상 마을이 혜택을받을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 도착가능한 행정리 수/총 행정리 수)× 100	84.4%	85%	86%	87%	88%
복지	4)노인복지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행복경로당 1개소 이상 운영하는 읍면 수/노인복지시설 미입지된 읍면 수)×100	81.2%	85%	85%	90%	95%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p.204

²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pp.204,230

〈표 4-8〉 충청남도 2016년과 2017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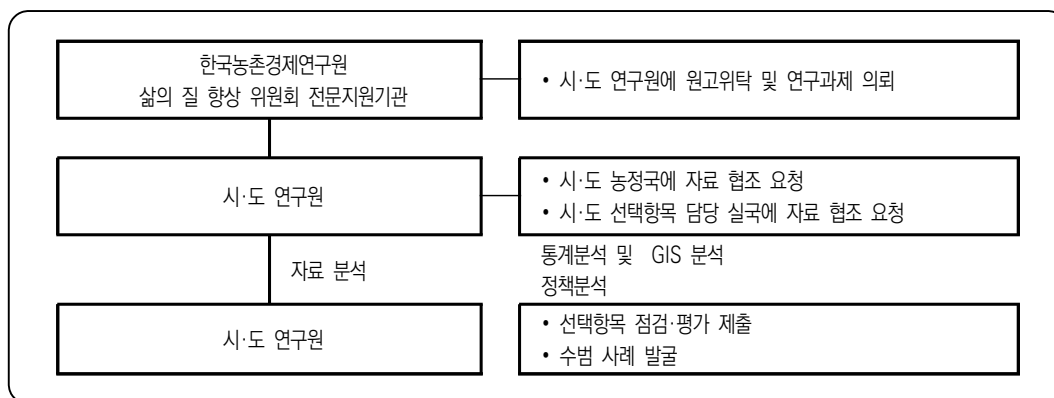
항목	점검방법	'16년 실적	'17년 실적	'16년 대비 달성율
주거 환경	(사업추진 수/전체 주택슬레이트 정비 사업대상)×100	15.0%	15.9%	0.9%
진료 서비스 접근성	(1차 이상 의료시설이 있는 면지역 법정리 수/ 전체 면지역 법정리 수)×100	22.4%	23.0%	0.6%
	(우리마을주치의제 시행되는 면지역 법정리 수/1차 이상 의료시설 생활권에 속하지 않은 면지역 법정리 수)×100	9.3%	9.6%	0.3%
구조 구급 출동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 도착가능한 행정리 수/총 행정리 수)×100	77.0%	79.4%	2.4%
노인 복지	(행복경로당 1개소 이상 운영하는 읍면 수/노인복지시설 미입지된 읍면 수)×100	81.2%	84.5%	3.3%

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p.230

2.2.3.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절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원고위탁 및 연구과제 방식으로 시·도 연구원에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의뢰하는 방식
 - 개별 연구자의 연구 활동으로 머물고 결과에 대한 환류와 도 시책 연결이 미흡할 수 있음.
- 이행실태 점검·평가 시 어려운 점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숙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해도는 높다할지라도 선택항목이 농정담당 사업이 아니라 타 실국의 사업이라는 점으로 인해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중앙부처의 시스템 및 지원수단 부재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정착에 기여하기 어려운 실정

〈그림 4-3〉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절차



3. 공무원 인식조사

3.1. 인터뷰 조사

3.1.1. 조사 개요

〈표 4-9〉 인터뷰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인터뷰 목적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지자체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방안
인터뷰 날짜	2018. 11. 2, 11.21, 12. 6, 12.18
인터뷰 대상	충청남도 농정국 - 농정과장, 농어촌복지팀장 및 담당 충남 시·군 담당 공무원
인터뷰 내용	농어촌서비스기준 및 제도의 이해 정도 제도의 중요성 및 필요성 법 제도 문제점, 조직의 문제점, 추진체계의 문제점, 예산의 문제점, 지표의 문제점 국가차원에서 개선해야하는 방안 도 및 시·군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 도차원에서의 추진 의지 여부

3.1.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인식

- (필요한 정책) 인구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이 공동화되고 살기 어렵기에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여야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유입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농어촌지역에 매우 필요한 제도이기에 실천 가능한 계획으로 수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하였으면 함.

- (충남의 민선7기 도정 방향과 일치) 충남 민선7기 도정방향과 일치하는 제도이기에 제도의 개선을 통해 운영을 원함.
 - 도시보다는 농어촌이 저소득층이 많기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는 농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이행실적이 없어 위원회 폐지) 충남의 경우 농어촌서비스기준 민선 5기 3농혁신위원 농어촌 삶의 질 서비스 이행팀이 있었으나 이행실적이 없어 위원회 폐지
 - 충청남도의 경우 민선 5기 3농혁신위원회 분과로 농어촌 삶의 질 서비스 이행 T/F 팀이 있었음.
 - 충청남도 농정국 주무팀에서 T/F 운영
 - 3농혁신위원회 분기별 보고를 할 때마다 실적이 없는 점,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지 않아 이행제고가 어려운 점, 농정국 사업이 아닌 점, 여러 부서 사업을 총괄해야 하는 점의 다양한 문제가 있어서 T/F 팀 재검토 시 해산하였음.
 - 지방차원에서는 어렵고 특히 농정국에서는 더욱 운영하기 어려움.
 - 충남의 3농정책은 재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음.
 - 도의회와 예산의 구조상 재정 투자가 어려웠음.

3.1.3.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부의 강력한 추진체계 및 제도 운용을 위한 시스템 부재) 관련법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천력이 부족했던 이유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추진체계 부재를 들 수 있음.
 - 현재 강력한 추진체계가 없고 기재부에서 농어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조사와 추진체계, 특별 재원, 평가 등 시스템이 있어야만 제도가 운영될 수 있으나, 현 제도는 추진을 위한 시스템 부재

- (너무 높은 지표 목표치와 많은 지표) 목표치가 높고 핵심항목이 너무 많아 재원을 고려하였을 때 실천이 어려움.
 - 실현 가능한 것을 항목으로 선정하고 목표치 설정 필요
 - 국민생활 전반에 대해서 무덤에서 요람까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 같으나, 재원 및 환경의 문제로 인해 모두 목표 달성하지 못함.
 - 중앙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업무의 필요성 인식 부재) 매년 11월 양식에 맞춰서 조사를 실시하나 조사의 취지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해 아쉬움.
 - 형식적인 통계조사, 조사의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해 타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때 답변을 할 수 없음.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교육 및 홍보 필요
 - 시도연구원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한다면 선택항목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 시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각 부서별에서 선택항목 제시하여 성과평가 실시) 각 부서마다 선택항목을

제시하여 지자체별 선택항목을 선정하여 평가 실시

- 현재 균형성과팀이 있고 각 부서마다 지표 2개를 선정해서 매년 12월에 목표치를 점검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시·군의 관심 제고 필요
 - 그러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하는데, 담당자의 부담이 많아지고 평가에 대한 부담이 강해질 염려가 큼.
-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부서에서 운용하여야 함)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 본 제도를 운용하여야 함.
- 논산시의 경우 각 부서의 정책을 만들 때 전략기획실과 함께 수립하고 있으며 성과를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음.
 - 각 부서에서 사업을 제시하면 전략기획실에서 타 부서와의 사업 중복등이 야기되지 않게 수정검토 지원
 - 이러한 기획부서에 전담팀을 운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음.

3.2. 설문 조사

3.2.1. 설문개요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인식정도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충청남도 담당 공무원 및 일반 공무원 266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소속은 충남도청에 31명과 그 외 시·군에 약 15명 정도씩 고르게 분포하여 있음.

〈표 4-10〉 설문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설문 목적	농어촌서비스기준 인식정도, 개선방안 조사
설문 기간	2018. 12. 3~ 12.18
설문 방법	1:1 면접조사
설문 대상	충남도청 및 충남도 각 시·군 공무원 266명

- 담당업무의 경우 농정업무를 담당하는 응답자가 35.0%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6.8%로 가장 적었으며 그 외의 업무 담당은 약 10% 대 전후의 고른 분포를 보임.
- 설문에 응한 공무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약 2년 4개월 정도가 되었으며 11년~20년 근무한 직원이 응답자의 약 43.6%를 차지하고 있었음.

〈표 4-11〉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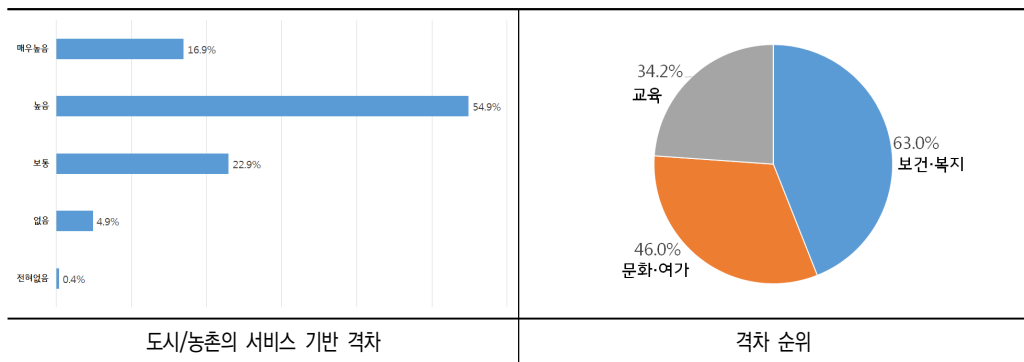
구분	빈도 및 비율					
소속	천안시: 16명	공주시: 15명	보령시: 15명	아산시: 17명	서산시: 17명	논산시: 16명
	계룡시: 16명	당진시: 16명	금산군: 15명	부여군: 16명	서천군: 15명	청양군: 15명
	홍성군: 15명	예산군: 16명	태안군: 15명	충청남도: 31명		
담당업무	농정: 35.0%	보건·복지: 9.4%	교육: 8.6%	정주생활 기반: 10.5%		
	경제 11.3%	활동·일자리: 문화·여가: 10.2%	환경·경관: 8.3%	안전: 6.8%		

3.2.2. 설문결과

- 농어촌서비스 현황 및 필요성
 - 농어촌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비롯한 지역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음.
 - 문의 결과 절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71.8%가 도시와 농촌의 서비스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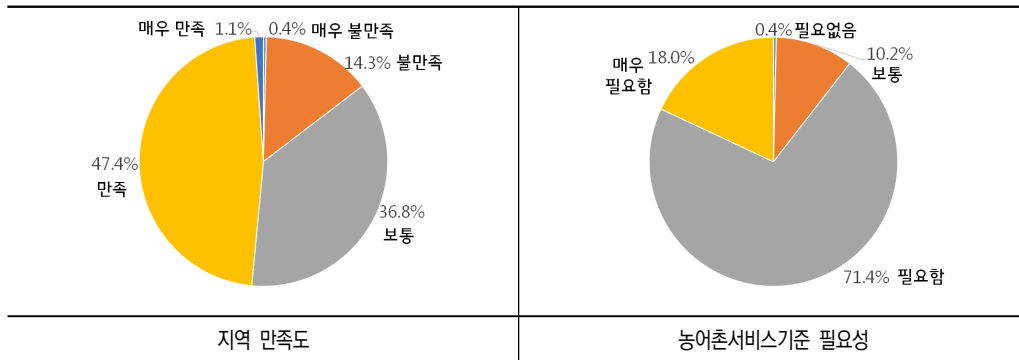
가 높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였음.

- 응답자들은 제시한 7가지²⁴의 분야 중 가장 심한 격차에 대하여 3가지씩 선택하도록 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였으며 다음으로 문화·여가, 교육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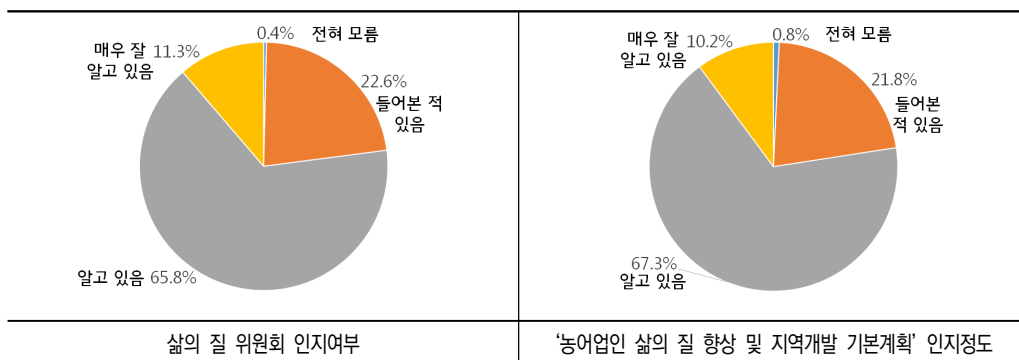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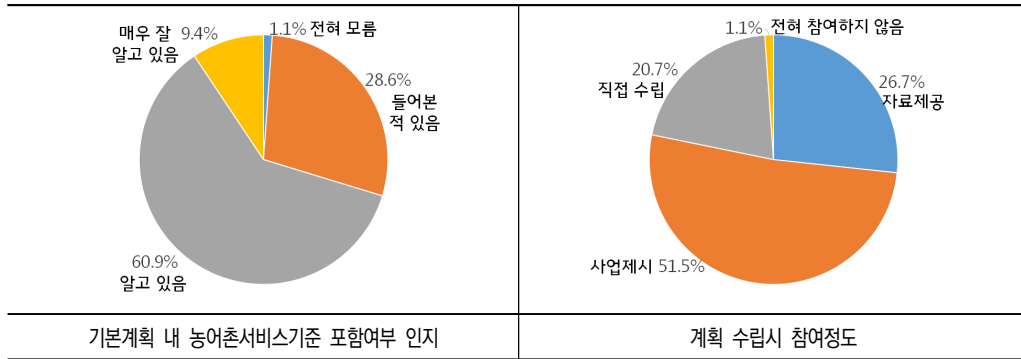
- 타 시·군과의 비교를 통한 근무 지역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만족과 매우 만족을 48.5%가 선택하였음. 보통을 선택한 응답자는 36.8%였으며 불만족을 선택한 응답자는 전체의 14.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지역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공서비스 수준을 측정하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필요도에 대해서는 전체의 대다수라 할 수 있는 89.4%의 응답자가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을 선택하였음.

²⁴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 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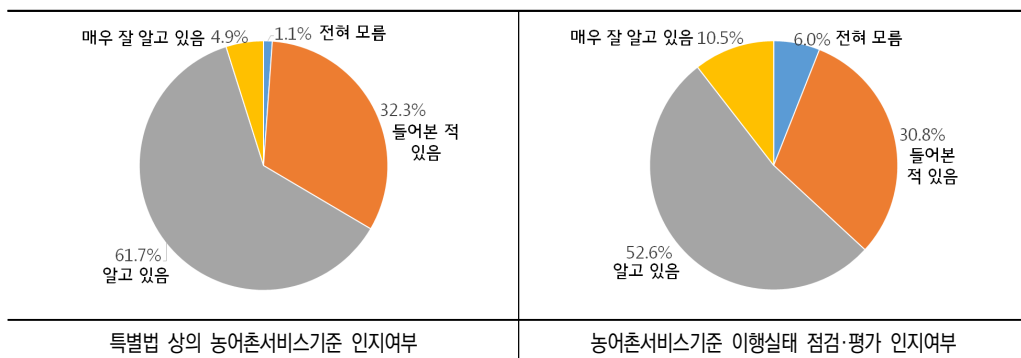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관련 인지도
 - 삶의 질 위원회에 대한 인지여부를 문의한 결과 알고 있다는 응답이 77.1%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은 77.5%의 응답자가 알고 있는 상태이며 기본계획 내에 농어촌서비스기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체의 70.3%가 인지하고 있음.
 - 계획 수립 시 참여를 해 본적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자료제공이 26.7%, 사업제시가 51.5%, 직접수립이 20.7%로 나타나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계획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획의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상태임.





○ 농어촌서비스기준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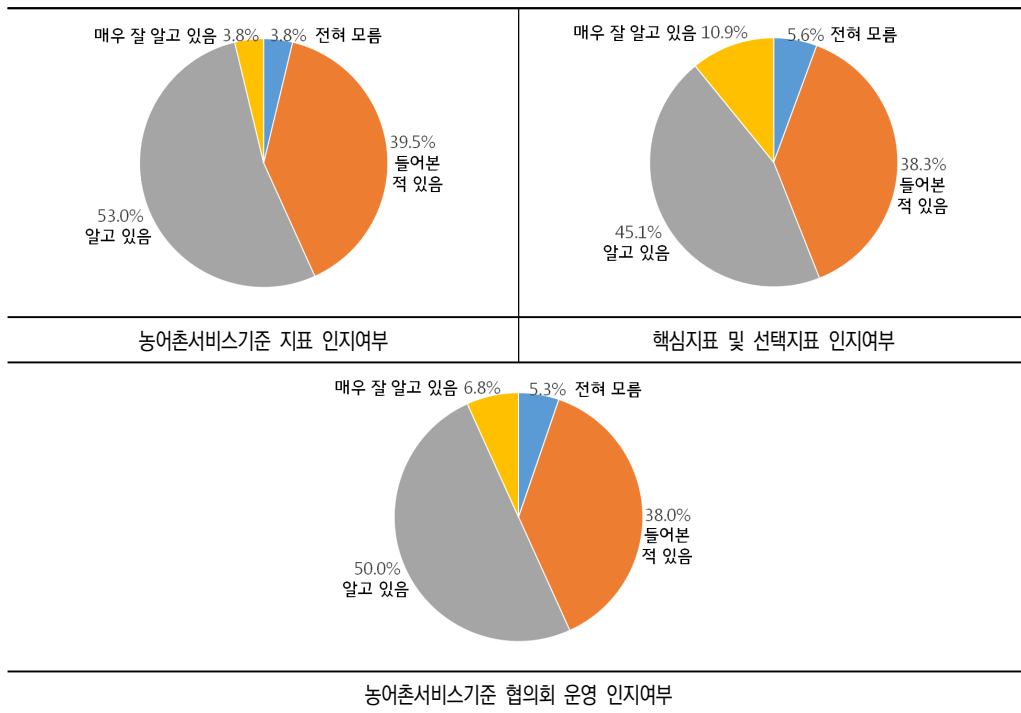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내에 존재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인지 정도에 대한 문의 결과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66.6%로 나타남.
- 매년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에 대하여 63.1%가 알고 있는 상태이며 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30.8%였으며 이를 전혀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6.0%가 존재하고 있음.
-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응답자가 매 항목에서 1% 내외 수준이었으나 이행실태 점검은 6.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태임.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지표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응답자가 전체의 56.8%

였으며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가 39.5%, 전혀 모르는 응답자가 3.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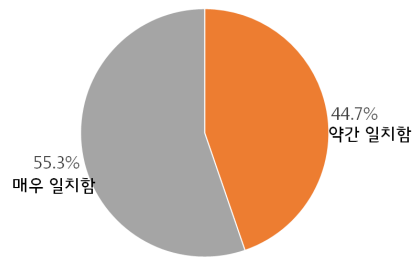
- 지표 중 국가 차원의 핵심지표와 지자체 차원의 선택지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56.0%였으며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38.3%, 전혀 모르는 응답자가 5.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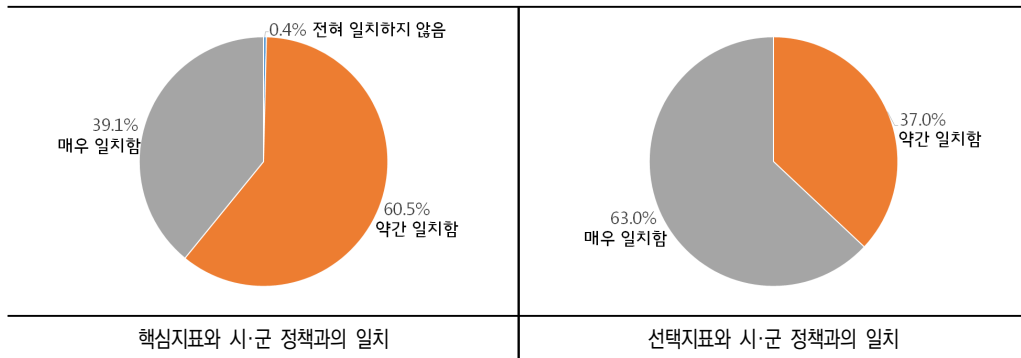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정책과의 연계성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농어촌서비스 지표와 해당 시·군의 정책과의 일치 정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로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없었으며 약간 일치가 44.7%였으며 55.3%의 가장 많은 인원이 매우 일치한다고 응답하였음.
- 국가차원의 핵심지표에 대한 일치에 대해서는 60.5%가 약간 일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9.1%가 매우 일치한다고 응답한 반면 충남도의 선택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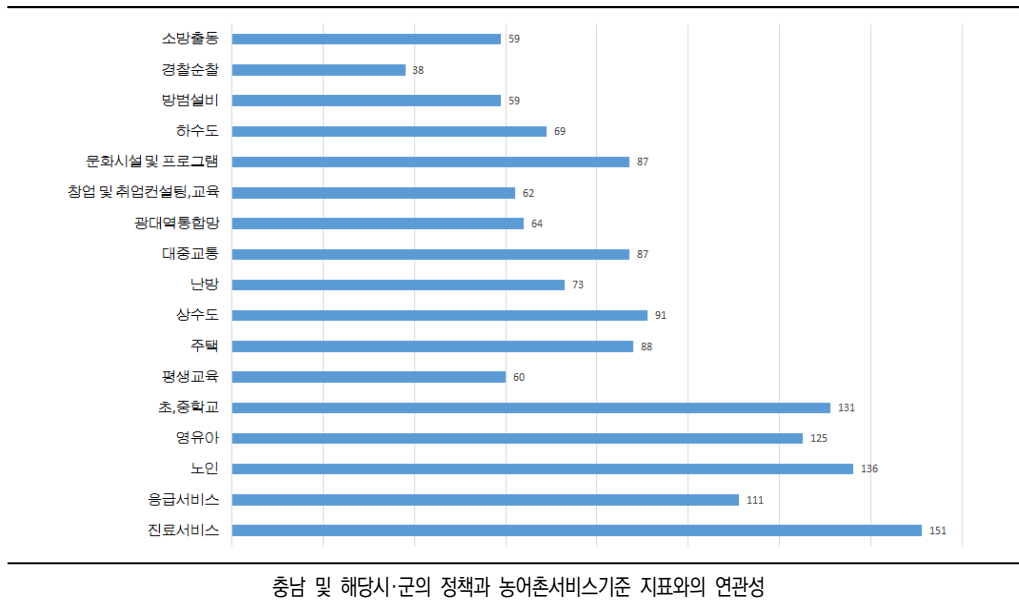
- 에 대해서는 37.0%가 약간 일치, 63.0%가 매우 일치한다고 답변하였음.
- 이를 미루어 볼 때 충청남도의 선택지표가 국가의 핵심지표에 비해 충청도의 각 시·군의 공무원의 해당 시·군의 정책과 보다 부합한다고 느끼고 있음.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와 시·군 정책과의 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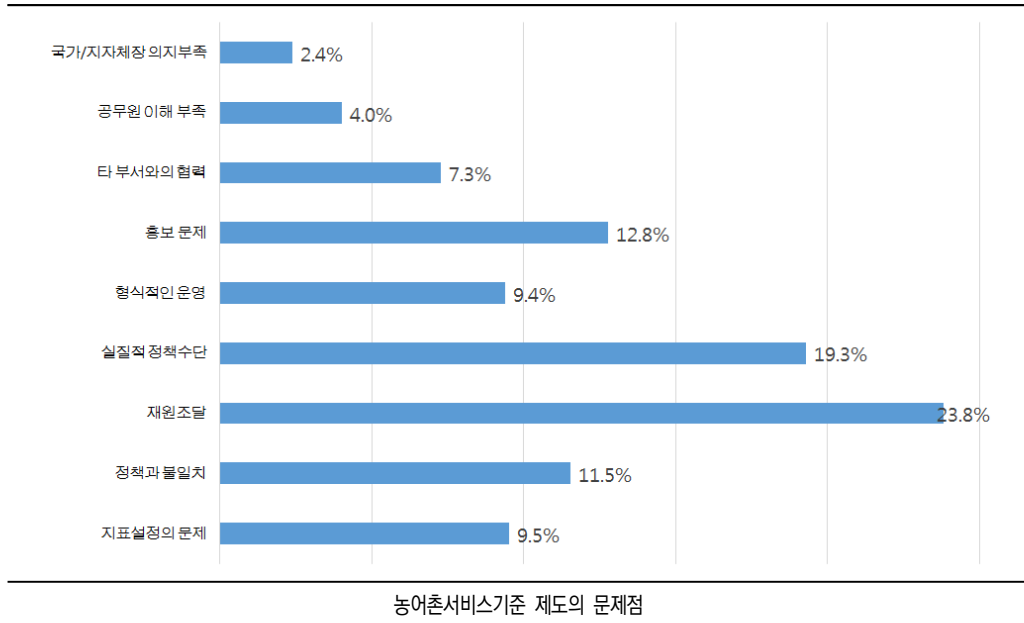


- 충청남도과 해당 시·군 정책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연관성이 높은 항목에 대하여 모두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서는 진료서비스과 노인, 영유아가 가장 연관성이 크다고 응답하였음.
- 가장 적은 연관성을 보인다고 선택받은 항목은 경찰순찰, 소방출동, 방법설비, 평생교육 순이었음.



○ 제도의 문제점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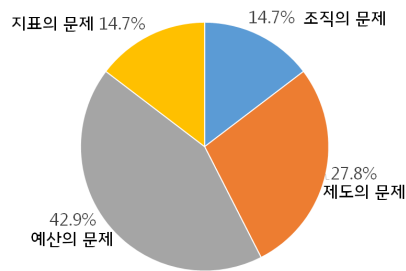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을 시행하였음.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응답자들이 3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음.
- 설문결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채용조달로 전체 빈도 798회의 23.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질적 정책수단(조직, 전문추진기관 등) 부재가 19.3%를 차지하였음.
- 다음으로 10% 이상을 나타낸 분야는 홍보의 문제와 정책과 불일치가 있었으며 가장 적게 선택된 부분은 국가 및 지자체장의 의지부족과 공무원의 이해 부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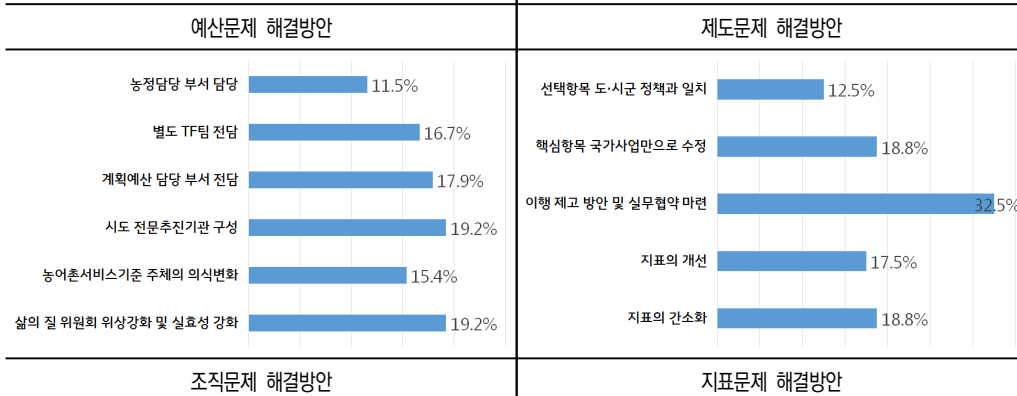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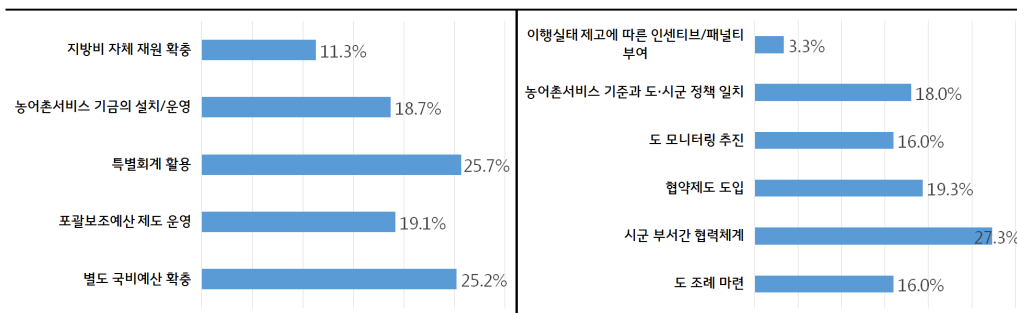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조직, 제도, 예산, 지표를 제시하였고 각 해결하여야 하는 중요사항을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설문을 시행하였음.
- 우선, 중요사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제도의 문제가 27.8%로 나타났고 지표의 문제와 조직의 문제가 14.7%로 동일하게 나타남.
-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기존 특별회계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25.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도의 국비 예산을 확충이 25.2%였음.
- 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군의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27.3%의 응답자가 선택하였으며 다음은 협약제도의 도입을 19.3%가 선택하였음.
- 조직과 관련하여 시도에 전문 추진기관을 구성하는 것과 삶의 질 위원회의 위상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2가지 항목이 동일하게 19.2%가 선택하였

으며 다음은 기획 예산 담당 부서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업무를 전담해야 함을 17.9%가 선택하였음.

- 마지막으로 지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행제고 방안 및 실무협약을 마련해야 한다는 항목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국가차원의 핵심항목 지표는 국가사업만으로 수정한다는 항목과 지표의 간소화 항목이 공동으로 18.8%를 나타냄.



제도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요사항



- 예산 확보시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할 의향에 대한 설문결과 긍정적 검토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검토가능이 32.7%, 적극 추진이 14.7%였으며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의견이 2.6%로 나타남.
- 충청남도 또는 각 시·군에서 추가되어야 할 선택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음.
- 제시된 의견을 분류한 결과 농어민의 건강, 경제 및 일자리, 복지, 자연환경, 거주환경 분야로 분류되었음.
- 기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내에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였으며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부분으로 농촌 사회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였음.

〈표 4-12〉 제시된 선택항목으로 추가항목

구분	추가항목	추가 필요성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통합관리 - 중대질병서비스 - 치매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인구 급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휠체어 대여 및 이동 편리성 확보 - 경제력이 약한 농촌의 경제 상황에서 중대질병 치료지원 필요 - 질병예방 차원
경제·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일자리, 창업 - 농공단지, 산업단지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조성으로 소득수준을 높여야 함 - 청년실업의 심각성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 다문화 지원서비스/다문화가정/다문화가정 교육 - 인구대책 - 청소년 진로교육/청소년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령화, 저출산 적극대처 필요 - 노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 농어촌 다문화가정의 복지지원 - 진로에 대한 정보부족 - 청소년 고민에 귀기울이는 시스템이 필요함
자연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자연환경/환경보존 - 악취제거 방안으로 축사개선 사업 개소수 - 일반쓰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등 환경 악화로 주민 불안감 상승 -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 축사 악취의 해결이 시급함, 생활환경 쾌적화 -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 필요
거주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임대주택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정보통신/정보통신 시설 - 체육시설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함. - 출산율 저사 및 다문화가정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가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문화 등 정서적인 부분도 있음. - 노인들이 많은 농촌 상황에서 정보부족 해결 - 정보통신 상태가 열악해서 개선이 필요함. -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가 필요함.

- 추가적으로 농어촌서비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타 의견수렴을 시행하였음.
- 제시된 의견을 예산, 제도, 조직, 지표의 4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 정리한 결과, 예산부문은 1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은 낙후지역에 대한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제도부문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도출되었는데 지표의 달성 기간을 설정하자는 것과 실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시행하자는 의견 등의 있었음.
- 조직부문은 전문인력과 전문 조직이 필요하며 조직이 독립성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현재의 노력보다 강력한 노력이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필요하다고 하였음.
- 지표부문은 지표의 단순화와 각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자체적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표 4-13〉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견

구분	내용
예산부문	- 낙후지역 특별예산 지원
제도부문	-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자세한 기본계획 수립 - 농어촌서비스 관련 시·군 조례제정 및 기본 기준설립 - 농촌의 기초적인 삶의 질에 대한 자세한 조사 및 분석 - 실행상황의 수시 점검 - 지표별 달성 기간을 장기·중기·단기 등으로 설정하여 시행 -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 제도 도입
조직부문	- 관계 부처별로 더 많은 노력 및 지자체 노력 필요 - 지자체별 독립적 운영 필요 - 맞춤형 전문인력 확충 및 관련된 분야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유도 필요 - 전문 인력이 확충되어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 필요
지표부문	- 기준비표의 단순화 -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를 획일적 적용이 아닌 지역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 - 농촌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환경지표 필요 -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지표 필요 - 의무적 기준이 아닌 지자체별 창의적 지표 필요

4. 소결

4.1. 인터뷰 조사 소결

○ 인식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해 매우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
- 이행실적 및 이행제고방안이 없어서 점차 소극적으로 변함.
- 지방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요구

○ 문제점

- 정부의 강력한 추진체계 및 제도 운용을 위한 시스템 마련 요구
- 지표가 너무 많고 지자체에서 이행을 제고할 수 없는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 농정분야 담당자만의 사업이 아니기에 업무의 필요성 및 인식 부재(형식적임.)
-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부서에서 제도를 운용하여야 함.
- 각 부서별에서 선택항목 제시하여 성과평가 실시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 가능함.

4.2. 설문조사 소결

○ 인식

- 도농격차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위해 농어촌서비스 기준 필요성에 대한 의식은 매우 높게 나타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지도도 77.1%로 높고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해 70.3%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음.

○ 연관성

- 농어촌서비스기준과 시·군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해 국가차원의 핵심지표의 경우 39.1% 정도, 충청남도 선택지표의 경우 63.0%가 매우 일치한 것으로 도출됨.
- 즉, 지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에 대해서만 정책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제 지자체 재원으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부분인 경찰순찰, 소방출동, 방법 등은 연관성이 낮게 도출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본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재원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실질적인 정책수단의 부재가 그 다음을 차지함.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산문제 해결, 제도문제 해결, 지표와 조직문제 해결 등의 순서로 필요성이 제기됨.
-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기존 특별회계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별도의 국비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 제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서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협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 삶의 질 위원회의 위상 및 실효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고 기획 예산 담당부서가 운영업무를 전담해야 하는 의견이 높음.
- 추가가 필요한 지표에 대해 건강분야, 경제·일자리분야, 복지, 자연환경, 거주환경 등의 항목이 제시됨.

○ 기타의견

- 마지막으로 농어촌서비스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관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낙후지역 특별예산을 활용하는 방안, 제도적부분에서는 시·군 조례제정, 기초적 삶의 질에 대한 상세한 조사·분석, 실행상황의 수시

점진, 전문가 컨설팅 제도 도입을 요구함.

- 조직은 전문인력이 확충되어야 하며,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의 단순화, 탄력적 지표 운영, 창의적 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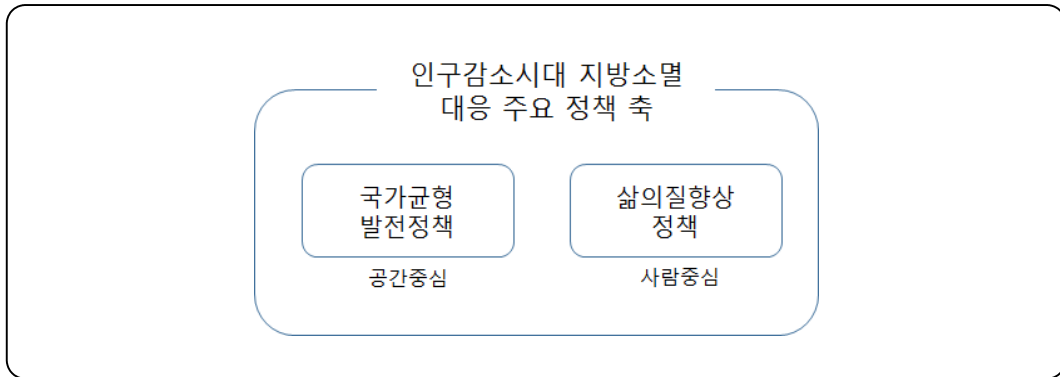
제 5 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개선방안

1.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 국가균형발전정책 수준으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위상정립
 - 인구감소시대 지방소멸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단순히 기존의 공간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넘어 국토 어느 곳에서 거주하든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중요성 강조 필요
 - 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이하 삶의질향상정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함께 인구감소시대 핵심정책의 두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공간의 재생·재편을 다룬 정책이라면 삶의질향상정책은 그러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까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위상정립 필요

〈그림 5-1〉 삶의질향상정책의 위상정립 개념도



- 삶의질향상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대안1)각각의 근거법에 기반하여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질향상위원회)를 법개정을 통하여 통합하고 대통령 직속 통합위원회로 재구성
 - 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삶의질향상정책(서비스기준제도)의 종합적인 논의 진행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삶의질향상특별법에 근거한 삶의질향상정책과 목적 및 영역 등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통합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대안2)때에 따라서는 삶의질향상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세부분과 위원회로의 재편 방법도 검토하되, 이 경우 세부분과의 운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현행대로 간사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특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와 연계하여 정책 대상지역을 결정하고 관련된 정책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
 - 농어촌서비스기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우선지원 등 검토

- 새로운 농어촌서비스 실태진단 지표 개발(정량·정성)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 농어촌서비스의 지표를 단순한 관리 및 척도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차원을 넘어 실제로 현장의 농어촌서비스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지표로의 검토 필요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현재의 큰 틀과 항목은 유지하되 실제 시·군의 농어촌서비스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별도의 정성적·정량적 지표(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개발
 - 개발된 지표를 바탕으로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전문가 그룹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군 농어촌서비스의 실태를 정확히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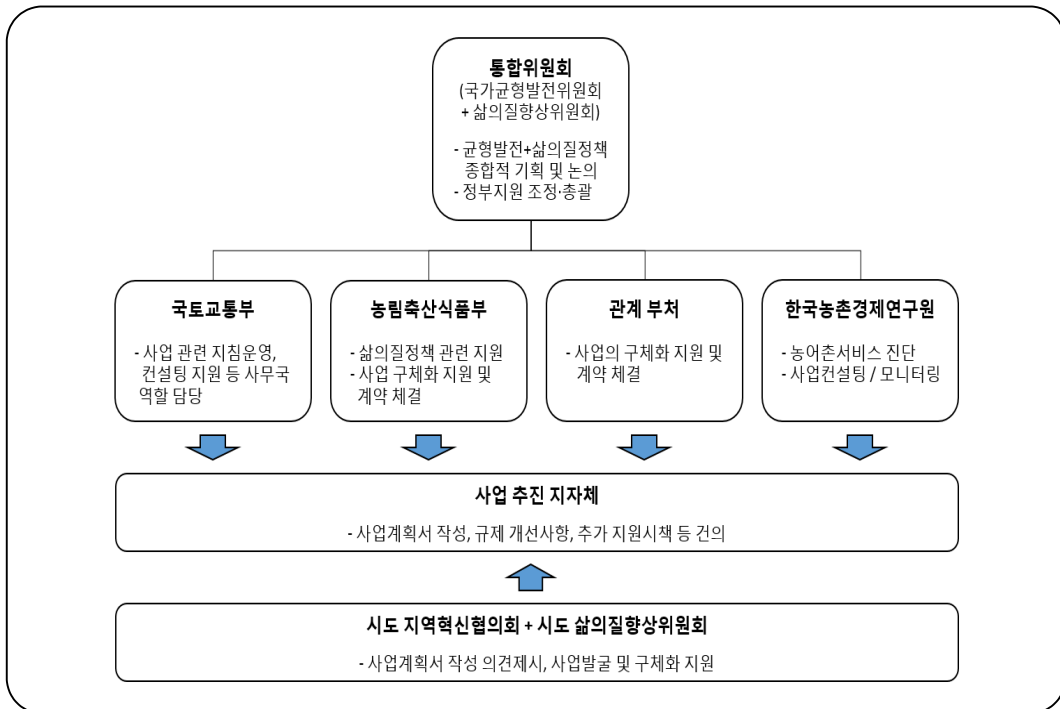
- 실태진단 하위지역에 대한 패널티 부여보다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적극 지원
 - 실태진단 결과 하위 지자체에 대해 취약한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가칭)삶의질향상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강제이행과 패널티 부여보다는 하위지역에 대한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직접편성사업이나 시도자율편성사업 및 시·군구자율편성사업 등의 대상사업 선정에 있어 농어촌서비스기준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하여 취약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등의 검토 필요
 - 특히, 취약한 기초 공공서비스분야를 우선 지원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연계 추진
 - 균특회계의 직접적인 활용은 어렵기에 2019년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하여 농어촌서비스 기반 확충 연계 추진
 - 지역발전투자협약에 있어 삶의질향상사업계획을 그대로 신청하거나, 실태진단 결과에 따른 삶의질향상사업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는 형태로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사전 컨설팅 실시

- 공모·신청 접수 단계에서 시·도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 중복성 검토 단계에서 관계부서 사업계획 종합검토에 삶의질향상 가능성 등도 검토
- 대상사업의 평가 및 선정 단계에서 농어촌서비스 실태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취약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하되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지역의 취약한 농어촌서비스 기반을 확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집중 평가
- 사업평가·환류 단계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진단 지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후 정책의사결정에 피드백
- 사전컨설팅 및 사업평가·환류 단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 수행

〈그림 5-2〉 수정형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연계 추진체계도



〈표 5-1〉 수정형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연계 추진도

구분	기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수정형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연계 추진도	
추진단계	주요내용	주체	주요내용	주체
사전 컨설팅	○ 사업계획서 사전 컨설팅	균형위 국토부	○ 사업계획서 사전 컨설팅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진단 결과 연계 컨설팅)	균형위 국토부 (농경연)
↓				
공모·신청접수	○ 기초지자체 사업신청(→ 광역지자체) ○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 ○ 사업계획 신청(광역지자체 → 균형위) - 광역지자체별 2개의 사업계획 제출	균형위 (국토부 지원)	○ 기초지자체 사업신청(→ 광역지자체) ○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및 살의질향상위원회 의견수렴 ○ 사업계획 신청(광역지자체 → 균형위) - 광역지자체별 2개의 사업계획 제출	균형위 (국토부· 농식품부 지원)
↓				
중복성 검토	○ 관계부처 사업계획 종합검토 - 중복성 여부, 선결과제, 정책부합 등 * 사업구체화(안) 기재 가능 ○ 종합검토의견 제출(관계부처 → 균형위)	관계부처	○ 관계부처 사업계획 종합검토 - 중복성 여부, 선결과제, 정책부합 등 - 살의질향상 가능성 여부 등 검토 * 사업구체화(안) 기재 가능 ○ 종합검토의견 제출(관계부처 → 균형위)	관계부처
↓				
평가·선정	○ 서면 심사(1차) - 단순 인프라사업, 구체성 미비사업 평가배제 - 현장실사 대상 신청사업 확정 ○ 현장 실사(2차) - 지역여건, 협력체계, 사업추진인지 등 조사 - 사업설명(PPT), 사업대상지·관련기관 방문 ○ 종합 심사(최종) - 서면심사 통과사업 종합평가 및 사업선정	균형위 (국토부 지원)	○ 서면 심사(1차) - 단순 인프라사업, 구체성 미비사업 평가배제 - 현장실사 대상 신청사업 확정 ○ 현장 실사(2차) - 지역여건, 협력체계, 사업추진인지 등 조사 - 사업설명(PPT), 사업대상지·관련기관 방문 ○ 종합 심사(최종) - 서면심사 통과사업 종합평가 및 사업선정 - 농어촌서비스 취약지역 우선 선정	균형위 (국토부· 농식품부 지원)
↓				
사업 컨설팅	○ 「컨설팅 지원단」 사업계획 보완·구체화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관계부처	○ 「컨설팅 지원단」 사업계획 보완·구체화 *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관계부처
↓				
투자협약 체결	○ 주관부처, 관계부처, 지자체 공동 협약 * 협약(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 균형위 심의·의결	균형위 및 관계부처	○ 주관부처, 관계부처, 지자체 공동 협약 * 협약(안)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 균형위 심의·의결	균형위 및 관계부처
↓				
사업추진	○ 예산배정 및 지자체 사업추진	관계부처, 지자체	○ 예산배정 및 지자체 사업추진	관계부처, 지자체
↓				
사업평가·환류	○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해 성과 제고	균형위, 관계부처	○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해 성과 제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진단 지표 활용)	균형위, 관계부처 (농경연)

주: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수정연계 추진도의 굵은 글씨 수정된 사항임

〈표 5-2〉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개선방안	주요 내용
농어업인 삶의질향상정책의 위상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정책 수준으로의 위상정립 • 공간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사람중심의 삶의질향상정책을 두 축으로 자리매김
삶의질향상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위원회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직속 통합위원회로 재구성(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부분과 위원회로 재편) •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태와 연계하여 추진
농어촌서비스 실태진단 지표 개발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서비스 실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정량적·정성적 지표 개발 • 전문가 그룹의 모니터링을 통한 농어촌서비스 실태 진단
실태진단 하위지역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촉진에서 적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강제이행과 패널티 부여보다는 하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 • ‘(가칭)삶의질향상사업계획’ 수립후 국비지원 • 균특회계의 대상사업 우선 선정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연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와 연계추진 체계 마련 • 삶의질향상사업계획을 반영하도록 컨설팅 • 시·도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의견 수렴 • 농어촌서비스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 • 농어촌서비스 실태진단 지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및 정책의사결정 피드백

2. 지방정부 차원의 개선방안

- (조직 대안1. 농어촌 삶의 질 서비스 이행 전담팀 운영으로 정례회를 통한 모니터링) 농정국 내에 농어촌 삶의 질 서비스 T/F팀을 운영
 - 초기에는 농정국내에 농어촌 삶의 질 T/F팀을 운영한 후 전담부서 설치
 - 전담팀 및 부서 설치 후 반기별·분기별 도지사 및 행정부지사 주재의 정례회를 통한 모니터링 실시
 - 전담부서 또는 위원회 분과위원 등을 검토하고, 정례회를 통한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제도 고착화 필요
- (조직 대안2. 사업부서가 아닌 기획부서에서 운용)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기획부서에서 제도 운용

- 논산시의 경우 각 부서의 정책을 만들 때 전략기획실과 함께 수립하고 있으며 성과를 관리하는 전담팀이 있음.
 - 각 부서에서 사업을 제시하면 전략기획실에서 타 부서와의 사업 중복 등이 야기되지 않게 수정검토 지원
 - 이러한 기획부서에 전담팀을 운영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정책 수립·운영
- (조직 대안3. 지방정부 전담조직 구성)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 연계한 지방정부 전담조직 구성 및 추진체계 정비
- 지방정부의 기획 예산 담당 부서 내 농어촌서비스기준 업무 전담인력·전담팀 운영 필요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전라북도의 ‘삶의 질 향상 정책과’와 같은 삶의 질 향상 정책 전담 부서를 운영하도록 함.
 -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삶의 질 향상 정책 담당 부서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계’ 또는 삶의 질 향상 정책 ‘팀’을 설치 운영
 - 전담조직 구성과 함께 지자체장 또는 부지자체장의 주재의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여러 부서가 함께 추진하는 균형발전 종합정책이기에 농정국에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재 기재부, 행자부, 농식품부 등의 정책이 광역자치단체로 해당 실국에서 담당하기에 종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총괄부서 필요
 - 국가직속기관과 도 총괄부서가 연계되도록 조직의 추진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조례 제정) 지자체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조례 마련
-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을 촉구하는 방안으로서 지자체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제도 운영을 위한 실천적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운영 조례안 마련

-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의 제정과 항목·내용 구성, 기준 운용 방식, 조직 운용,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조례 제정
- (선택항목 지표 개선) 현재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 및 목표치를 볼 때 재원 및 실현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음.
-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지표 선정/지표의 단순화 필요
 - 선택항목 지표 선정 시 통일된 선정 기준을 제시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원
 -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를 획일적 적용이 아닌 지역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 적용
 - 도와 시·군의 삶의 질과 복지에 해당되는 사업을 분류하여 선택항목을 선정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정량적 지표의 연차별 계획, 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수립
- (선택항목 지표와 지자체 차원의 정책 일치화) 선택항목 지표는 도·시·군 정책과 일치하여 설정
- 시·도별로 선택항목을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중기 목표치를 조례를 통해 고시
 - 지자체에서는 삶의 질 향상 시·도계획에 반드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담아 이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동 계획에 수립
- (균형발전차원의 시각 전환) 농어촌은 공동화되고 점점 살기 어려워지기에 농어촌 삶의 질과 농어촌서비스기준 등은 균형발전차원에서 바라보고 특별예산 마련
- 균형발전차원으로 사고를 전환하여 특별회계(균형발전)로 추진하여야 함.
 - 경제적 논리도 중요하나 현 균형발전 예산투입을 통해 강제성을 띤 사업 추진 필요

- (마인드 전환을 위한 교육) 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마인드 전환
 - 예산 확보를 위해 균형발전차원의 시각 전환을 위한 교육필요(중앙 공무원의 마인드 전환도 필요)
 - 서비스기준, 삶의 질 향상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함.
 - 실행단계의 각 부서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
 - 권장사항이 아니라 평가 등을 통해 강제할 필요가 있음.

- (협력적 연계 체계 마련) 추진조직의 운영 및 협력체계 마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국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지역 단체, 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의 추진조직 운영 및 협력체계 마련
 - 현장전문가 등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체계 마련

- (선택항목을 지자체 성과 지표로 활용)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을 지자체 삶의 질 향상 정책 성과지표로 평가하여 지자체 예산 반영 필요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이행 촉진을 위해 선택항목(지자체 선정 관리 항목)을 부문별 성과 지표로 활용하여 지자체의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실적을 평가
 -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 결과(전년 대비 향상 정도)를 익년도 지자체 예산에 반영
 - 농어촌서비스기준을 평가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지자체의 관심 증대 및 관련 예산사업과의 연계 추진 유도
 - 지자체의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지자체 관리 항목)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평가의 가산점으로 활용

- (강제성을 기초로 한 추진 방침 필요)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가 권고사항이며 농어촌 복지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기에 지자체장의 의지를 제고하기는 쉽지 않음.
 - 이에 지자체장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으로 특별회계로 강제성을 기초로 한 추진 방침 필요
 - 농어촌서비스기준 사업 투입 시 하드웨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파일럿 연구 수행) 한 개의 도와 한 개의 시·군을 사례로 하여 현재 정책방향 및 사업을 분석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목적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분석하여 기준을 설정하는 파일럿 연구 필요
 - 타 시·군에 있는 모범 사례를 도출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정책 확산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현실성 있는 정책이 될 것임.
 - 농어촌의 기초적인 삶의 질에 대한 상세한 조사·분석

- (컨설팅제도 도입)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 제도 도입
 - 전문가 컨설팅 제도 도입으로 이행제고를 위한 지자체별 방안 제시
 - 컨설팅 시 타 지역의 수범사례 공유

- (각 부서별에서 선택항목 제시하여 성과평가 실시) 각 부서마다 선택항목을 제시하여 지자체별 선택항목을 선정하여 평가 실시
 - 현재 균형성과팀이 있고 각 부서마다 지표 2개를 선정해서 매년 12월에 목표치를 점검하고 있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시·군의 관심 제고 필요
 - 그러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야 하는데, 담당자의 부담이 많아지고 평가에 대한 부담이 강해질 염려가 큼.

부 록 1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2011~2013)

부문	항목	세부내용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가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난방	읍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의 수질을 검사하고,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 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인도(人道)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교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고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재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방과 후 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의견 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보건 의료	진료 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순회방문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 방문을 받는다.
	약품 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복지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 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 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도서·벽지에 대한 응급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소방 서비스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 이상으로 한다.
	도난 방지	도난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가 주요 간선도로 길목에 설치되어 있다.
문화	경찰 서비스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독서	읍·면 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정보 통신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 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 구축률을 80% 이상으로 한다.

부 록 2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2014년, 9개 부문 32개 항목)

부문	관련항목	농어촌서비스기준
주거	주택	최저주거기준 이상 주택(거주 기구)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
	난방	읍 지역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50% 수준으로 하고,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난방비 저감 정책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상수도	면지역 상수도보급률을 75% 이상으로 한다. 지자체는 원수 수질검사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관리를 해야 한다.
	하수도	하수도보급률을 71% 이상으로 한다.
교통	대중교통	도보 15분 거리 내 버스정류장에서 노선버스, 순환버스 등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수요 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수요 대응형 준공공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여객선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행된다. 도서의 주민은 여객선 운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인도	읍·면 소재지에 접근하는 주요 농어촌 생활도로 정비 시 차도와 구분된 인도를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교육	유치원/초중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고등학교	시·군에 1개교 이상 우수 고등학교를 육성한다.
	폐교	폐교 시 학생들의 통학 및 폐교시설의 활용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방과후학교	교과 과목, 특기 적성 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비율을 70% 이상으로 한다.
	의견수렴	시·군에 지자체와 교육청, 주민 등으로 구성된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보건 의료	평생교육	읍·면별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 거점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실 등 중요과목 의사 진료가 가능하다.
	순회방문	의료 접근성이 낮은 마을에서는 마을별로 월 1회 이상 보건소 등의 전문 인력의 순회방문을 받는다.
복지	의약품구입	자동차로 20분 내에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다.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자동차로 30분 내에 청소년센터에 도달할 수 있다.
	아동	자동차로 20분 내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아동센터 등 방과후 돌봄 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동차로 20분 내에 소규모 영유아 보육시설에 도달할 수 있다.
응급	다문화가족	자동차로 30분 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시설에 접근할 수 있다. 교통 불편으로 센터이용이 어려운 경우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된 구급차가 30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한다.
안전	도서·벽지 서비스	낙도·벽지에 헬기·선박을 이용한 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방법설비	절도, 강도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법용 CCTV를 설치한다.
	경찰 출동	112 신고 시 출동시간을 10분 이내로 한다.
문화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을 55%이상으로 한다.
	독서	읍·면내에서 도서 열람 및 대출이 가능하다.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자동차로 30분 내에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 도달할 수 있고,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정보 통신	찾아가는 문화공연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과 지역 자체 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2회 이상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다.
	초고속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초고속망 접속이 가능하고, IPTV 시청이 가능한 광대역 통합망구축률을 80%이상으로 한다.

부 록 3

국가차원의 핵심항목

부문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 ('19)
1. 보건 복지	1) 진료 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능하다.	80
	2) 응급 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7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80
2. 교육 여건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0
	6)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40
3. 정주 생활 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95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2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70
	10)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90
4. 경제 활동 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0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100
6. 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5
7. 안전 (생활 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16) 경찰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17)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55

부 록 4

지자체 차원의 선택항목

강원도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기준	
교육여건	소규모 농어촌학교활성화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육과정 운영	
		강원에듀버스운영	사군별 도입 전체학교 대비 에듀버스 지원학교 비율
	평생교육 여건 기반조성	사군별 평생교육도시 지정, 평생교육사 배치, 행복학습센터 설치	
정주생활기반	주거환경 개선	농어촌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	
경제활동일자리	농촌경제 활성화	기업형 새농촌, 농촌체험 휴양마을, 6차산업화 인증사업자 확대를 통해 농어촌 일자리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문화여가	문화격차 해소	사군별 영화관 설치운영	

충청북도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정주생활기반	석면 슬레이트	농·산·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석면슬레이트 주택을 매년 5% 이상 감소시킨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지원사업	농촌형 교통복지모델을 발굴 및 운영한다.	대중교통 노선이 닿지 않는 지역에 적절한 이동수단 공급(%)
경제활동·일자리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 시켜 농어촌 이익활동에 도움을 준다.	농협을 제외한 3가지 유형(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단체를 읍·면당 2개 이상 운영되도록 한다.(개소)
보건/복지	자살률	노인 자살비율을 감소시킨다.	기 설치된 보건소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한다.(%)
안전	방법설비	CCTV 설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설치된 방법용 CCTV를 HD급 이상으로 개선한다.	기 설치된 CCTV 화질을 200만 화소 이상으로 개선한다.(%)

충청남도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주거	1) 주거환경	농산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건강 및 환경피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의료	2) 진료서비스 접근성	면지역에서 1차 이상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면지역의료시설 접근성을 40% 이상으로 한다.	1차이상 의료시설 혜택받는 법정리 비율(%) (보완지표)의료취약 마을에 보안전인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시행(%)
안전	3) 구조구급 출동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10분 이내 도착가능하다.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95% 이상 마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	4) 노인복지	읍면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보건 복지	독거노인 돌봄	독거노인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어촌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혜택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	
	노인치매 돌봄	시·군 내에서 치매극복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치매돌봄 서비스 혜택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	
교육 여건	어울림학교	읍면지역 초중학교는 어울림학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울림학교 지정 초·중학교 비율을 25%이상으로 한다(%)	
정주 생활 기반	그룹홈	주거 및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 그룹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경로당 중 그룹홈 서비스가 제공되는 비율을 15%이상으로 한다 (%)	
경제·일자리	노인 일자리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 수 대비 노인일자리 수의 비율을 80%이상으로 한다.	
문화·여가	통합문화이용권	소외 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비율을 95%이상으로 한다(%)	
	문화 동호인	문화 동호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농어촌지역 문화동호인 비중을 5%까지 확대한다(%)	
안전	어업인 안전	어업인의 안전 공제 가입률 제고로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보장한다.	(데이터미비로 매년평가 불가)	

경상북도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보건복지	복지통합시스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복지를 통합적,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지역복지기반 통합사례 관리실적 지표를 500이상으로 유지한다.
교육	교육 다양성	시·군 내에서 정규교과 이외의 체험, 진로교육, 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교육시설 및 조직 수 3개 이상 혹은 교육 프로그램 5개 이상을 운영한다(1).
정주생활 기반	교통 정보	이동을 위해 필요한 대중교통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통정보 제공 수단을 2개 이상 운영한다.
경제활동·일자리	귀농·귀촌	시·군 내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농산어촌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서비스가 있다.	귀농·귀촌 관련 서비스를 1개 이상 제공한다(2).
	농업 일자리 정보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을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 일손 돕기 중개창구 등 일자리 공급 서비스를 1개 이상 제공한다.
문화·여가	생활체육	농어촌 주민 누구나 30분 이내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규칙적인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읍면별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상시적인 체육교실을 운영한다.

경상남도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기준
보건복지	1) 찾아가는 산부인과	산부인과 병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임신부에게 산전관리 서비스와 출산을 돕는다.
교육여건	2) 기초수급자 자녀 멘토링	대학생 멘토링 대상 기초수급자 자녀에게 주 1회 학생 개별 방문 지도를 제공한다.
	3) 서민자녀 교육지원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정환경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제공한다
정주생활기반	4) 독거노인 공동생활	홀로 사는 어르신 가운데 공동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공동생활가정을 제공한다.
경제활동일자리	5)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등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도우미를 지원한다.
문화여가	6) 실내수영장 설치	지역에서 수영활동이 가능한 실내수영장이 있고, 수영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도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정주생활기반	1) 석면슬레이트	농어촌 주택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한다.	석면슬레이트 개선사업을 통해 매년 2%씩 슬레이트 주택 수를 감소한다.
	2) 대중교통취약 지원사업	농촌형 교통복지모델을 발굴 및 운영한다.	전체 마을 수 대비 공영버스 운행마을 수의 비율을 100%로 한다.
경제활동 일자리	3) 농가도우미	농어촌 여성농업인들이 영농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준다.	여성농업인들의 출산 등 곤란에 처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신청자에 대하여 100%도우미를 지원한다.
	4)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농어촌 이익 활동에 도움을 준다	전체 읍·면·동 수 대비 각 유형별 단체 수가 11개 이상으로 한다.
문화여가	5) 행복바우처 카드	여성농업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가능한 여성농업인 수 대비 행복바우처 신청 수의 비율을 30%이상으로 한다.
안전	6)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 재해보험료 품목확대 및 가입률 제고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보장한다.(전년도가입률+2%)	재해보험 가입 농가 수를 3,000농가 이상으로 한다.

부 록 5

지역발전투자협약서(예시)

[별첨자료 - 참여기관간 사업계약서(예시)]

(사 업 명) 공동추진 협약서

○○시·도·시(군)·○○시(군)·○○시(군)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_____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도·○○시(군)·○○시(군)·○○시(군)의 상호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반 업무와 관련된 상호 역할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내용) ○○시·도·○○시(군)·○○시(군)·○○시(군)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본 협약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본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한다.

1. -----
2. -----
3.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관심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협약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은 ○○○까지로 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월 일

○○시·도 ○○시장(군수) ○○시장(군수)

부 록 6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설문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충남연구원에서는 「농어촌서비스기준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 연계 및 추진 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설문에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어촌서비스기준?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공공서비스 항목과 수준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11년 1월에 8개 부문의 31개 서비스 기준 항목을 공표한바 있음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
 •(개념) 농어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교통·교육·의료·안전·문화 등 공공서비스 항목별 최소기준을 설정하여 관리
 •(활용) 매년 농어촌 시·군을 기본단위로 기준달성 정도를 파악·분석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자원 배분 및 신규정책 발굴 등에 활용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윤정미
 Tel : 041-840-1203(E-mail : mscoco@daum.net)

※ 회답 및 문의처 :

성 별	① 남	② 여	현재 담당분야 근무연수	년	개월
소속	① 천안시 ② 공주시 ③ 보령시 ④ 아산시 ⑤ 서산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당진시 ⑨ 금산군 ⑩ 부여군 ⑪ 서천군 ⑫ 청양군 ⑬ 홍성군 ⑭ 예산군 ⑮ 태안군 ⑯ 충남도청				
담당분야	① 농정 ② 보건·복지 ③ 교육 ④ 정주생활 기반 ⑤ 경제 활동·일자리 ⑥ 문화·여가 ⑦ 환경·경관 ⑧ 안전				
총 근무년수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20년 ④ 21년 이상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운용 현황(자료 :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 2011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
 - '제3차 기본계획' 도입에 따라, 7개 부문 17개 항목의 '핵심/중점'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선택/중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 제도 도입 후 매년 항목별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 실시
- 2018년 담당 부처와 핵심 항목 개정을 논의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통해 변경 추진

■ 국가차원의 핵심항목

부문	핵심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1.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가 가능하다.	80
	2) 응급서비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97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0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읍·면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80
2.교육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0
	6) 평생교육	읍면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40
3.정주·생활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95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2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O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65
	10) 대중교통	마을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4.경제·활동·일자리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90
	12) 창업 및 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제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0
5.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내 문화예술회원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100
6.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5
7.안전	15)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16) 경찰 순찰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00
	17) 소방 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55

■ 충청남도의 선택항목

부문	선택항목	선택항목 서비스기준	세부기준
주거	1) 주거 환경	농어촌 주택의 석면 클레이트 소재 지붕을 개량한다.	건강 및 환경파해저감을 위한 주택환경개선을 90% 이상으로 한다.(%)
의료	2) 진료 서비스 접근성	면지역에서 1차 이상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1차이상 의료시설 혜택받는 법정리 비율(%) (보안지표)의류류와 마을에 보인리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시행%
안전	3) 구조 구급 출동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10분 이내 도착가능하다.	구조구급신고 발생 시 95% 이상 마을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조구급센터로부터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	4) 노인 복지	읍면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하는 사실이 1개 이상 운영된다.	읍면동별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 받을 수 있다.(%)

□ 농어촌서비스 현황 및 필요성

1. 도시와 농촌의 서비스 기반의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없음 ② 없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2. 격차가 있다면 어떤 부분의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 ,)
 ① 보건·복지 ② 교육 ③ 정주생활 기반 ④ 경제 활동·일자리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
3. 타 시군에 비해 현재 근무하시는 시·군의 농어촌서비스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4.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삶의 질 공공서비스 수준(농어촌서비스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관련 인지도

5. 민·관 합동의 ‘삶의 질 향상 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와 실무위원회를 알고 계십니까?
 (삶의 질 향상 위원회 구성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장관 및 실장)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은 있음 ③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5년마다 중앙정부 각 부처가 협력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은 있음 ③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7. 5년마다 수립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에 농어촌서비스기

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은 있음 ③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8.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계획 수립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참여하지 않음 ② 조금 참여함(자료제공) ③ 참여함(사업제시) ④ 직접 수립함

□ 농어촌서비스기준 인지도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농어촌 서비스 기준에 관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은 있음 ③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p>「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농어촌 서비스기준 관련 주요 내용</p> <p>제3조 제6호: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정의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p> <p>제5조 제1항 제10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범위) 5년마다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 수립</p> <p>제8조 제1·2항: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조사 항목·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제44조 제1항~제5항: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제정·운동 등</p> <p>① 정부는 농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운동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⑤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 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실태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동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6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원)</p>
--

10. 농어촌서비스기준이 2011년부터 시행되고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이행실태 점검·평가가 진행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모름 ② 들어본 적은 있음 ③ 알고 있음 ④ 매우 잘 알고 있음

17.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에 관한 지자체 조례가 있습니까?

- ① 모름 ② 들어본 적은 있음 ③ 알고 있음 ④ 내용도 잘 알고 있음

18. 근무하시는 지역은 어느 분야의 정책이 집중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보건·복지 ② 교육 ③ 정주생활 기반 ④ 경제 활동·일자리
- ⑤ 문화·여가 ⑥ 환경·경관 ⑦ 안전

□ 제도의 문제점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9.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개 선택 (, ,)

- ① 지표설정의 문제 ② 시군정책과 농어촌서비스기준 지표 불일치의 문제
- ③ 재원조달의 문제 ④ 실질적 정책 수단(조직, 전문추진기관 등) 부재
- ⑤ 강제성이 없는 형식적인 운영 ⑥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에 대한 홍보 문제
- ⑦ 타 부서와의 협력 어려움 ⑧ 운영 담당 공무원들의 제도 이해 부족
- ⑨ 국가 및 지자체장의 의지 부족 ⑩ 기타 : _____

20.(대분류) 제도 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조직의 문제(21번으로 이동) ② 제도의 문제(22번으로 이동)
- ③ 예산의 문제(23번으로 이동) ④ 지표의 문제(24번으로 이동)

21.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 ① 삶의 질 위원회의 위상 강화 및 실효성 강화
- ②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교육·홍보·학습 확대로 주체의 의식변화
- ③ 시도 전문추진기관 구성
- ④ 기획 예산 담당 부서가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업무 전담
- ⑤ 별도의 TF를 꾸려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업무 전담
- ⑥ 기존과 같이 농정 담당 부서에서 운영 업무 전담해야함
- ⑦ 기타 : _____

22.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 ① 도차원의 조례 마련

- ② 시군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 ③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촉진 협약제도(국가-도- 시군) 도입
- ④ 도차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⑤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도·시군 정책과 일치하여 설정
- ⑥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제고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⑦ 기타 : _____

23.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 ① 별도의 국비 예산의 확충
- ② 중앙 관련부처간 연계 협력을 통한 포괄보조 예산제도의 운영
- ③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기존 특별회계의 활용
- ④ 농어촌서비스 관련 기금의 설치 및 운영
- ⑤ 지방비 자체 재원의 확충
- ⑥ 기타 : _____

23-1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촉진 협약제도(국가-도- 시군) 도입 및 기타 예산 지원 방식을 통해 시군단위에서 서비스 기준 특정 선택항목을 제정·운용할 때 관련 사업예산을 지원한다면 응답자의 시군에서는 시군 정책과 서비스기준 제도를 연계해 운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관심 없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
- ② 검토해 볼 수 있음
- ③ 긍정적으로 검토
- ④ 적극적으로 추진

24. 지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 ① 지표의 간소화
- ② 지표의 개선
- ③ 지표 개선 시 각 부처별 이행 제고 방안 및 실무 협약 마련
- ④ 국가차원의 핵심항목 지표는 국가 사업만으로 수정
- ⑤ 지자체 차원의 선택항목 지표는 도·시군 정책과 일치하여 설정

24-1.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

- ① 진료서비스 ② 응급서비스 ③ 노인 ④ 영유아 ⑤ 초·중학교 ⑥ 평생교육
- ⑦ 주택 ⑧ 상수도 ⑨ 난방 ⑩ 대중교통 ⑪ 광대역통합망 ⑫ 창업및취업컨설팅·교육

⑬ 문화시설및프로그램 ⑭ 하수도 ⑮방범설비 ⑯경찰순찰 ⑰소방출동

24-2. 충청남도 또는 해당 시군의 선택항목으로 추가되어야 할 지표가 있다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명:)
(추가 필요성:)

25.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